

우리나라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문제점 및 개선점에 관한 연구

김재후* · 김문영** · 조은경***

【요약】

본 연구에서는 프로파일링이 발전한 영미법계와 달리, 우리나라 프로파일링이 갖는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프로파일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추후 프로파일링 활용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프로파일링의 문제점은 조직 및 시스템 운용과 인력 문제, 프로파일링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이해 부족, 프로파일링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프로파일링의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첫 번째, 조직 및 시스템 개편과 인력 채용에 관한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전문적인 인재 고도화 개발 및 훈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로파일링의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 의문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즉, 수사현장에서 프로파일링의 적극 활용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프로파일링의 인식을 완화할 방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추후 프로파일링의 발전 및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범죄자 프로파일링, 프로파일러, 프로파일링 기법, 프로파일링 발전 방향

* 동국대학교(서울)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석사과정(제1저자)

** 동국대학교(서울)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석사과정(공동저자)

*** 동국대학교(서울) 경찰행정학부 교수(교신저자), ekjo@dongguk.edu

목 차
I. 서 론
II. 프로파일링이란?
III. 각국의 범죄자 프로파일링
IV. 우리나라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문제점
V. 우리나라 프로파일링의 개선점
VI. 결 론

I. 서 론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유영철, 강호순 등과 같은 연쇄살인범들의 등장으로 급부상한 개념이다. 이는 대중들에게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였으며 범죄를 소재로 한 TV 프로그램이 전국으로 방영되면서 프로파일링에 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관심은 대중뿐만 아니라 수사적 차원에서도 고조되기 시작했다. 연쇄살인범의 등장, 다양한 범죄유형의 확산 등 날이 갈수록 흉포해지는 범죄는 프로파일링의 필요성을 부각했으며 우리나라에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도입되는 도화선이 되었다(최규환, 2020).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범죄분석팀’을 개설하고 이듬해인 2005년, 경찰청은 범죄분석요원(프로파일러)을 채용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범죄수사에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적용하고자 했다. 이는 프로파일링 기법이 수사현장에 활용됨으로써 범죄수사에 발전을 이룩할 것으로 예상했다(허경미, 2015). 하지만 기존 수사관들이 가진 프로파일링에 대한 부정적 인식, 미흡한 효용성 평가 등 여러 문제는 프로파일링이 범죄수사에 활용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프로파일링의 선용과 발전에 한계를 가져왔으며 시스템 운용과 제도적 개선에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우리나라와 달리, 영미법계에서는 범죄수사에서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대한 활용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국립폭력범죄분석센터(National Center for the Analysis of Violent Crime, NCAVC) 내에 행동 연구 및 교육부(Behavioral Research & Instruction Unit, BRIU)를 개설함으로써 수사

관들에게 전문적으로 프로파일링을 교육할 뿐만 아니라 프로파일링 연구를 통해 프로파일링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한다(허경미, 2015). 영국의 경우,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민영화함으로써 프로파일링의 폭넓은 활용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처럼 영미법계는 프로파일링의 융성과 연구에 제한을 두지 않아 프로파일링의 활용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프로파일링의 활용, 연구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사현장에서의 응용, 프로파일링 연구 등 우리나라가 갖는 프로파일링의 문제점을 확인함으로써 그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갖는 문제점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문제의 보완 및 개선할 점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나아갈 방향을 도모하고자 한다.

II. 프로파일링이란?

1. 프로파일링의 정의 및 유형

범죄자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은 범죄 현장에 존재하는 증거를 기반하여 범죄자의 행동 특성 및 심리적 특징을 분석하고 범행 가능성이 있는 용의자를 수사하는 것이다(Ainsworth, 2001; Douglas, Ressler, Burgess, & Hartman, 1986; Muller, 2000). 이는 범죄자 프로파일링 외에도 ‘심리학적 프로파일링(Psychological Profiling)’, ‘범죄 현장 분석(Crime Scene Analysis)’ 등으로도 지칭된다.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1970년대 미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이하 FBI)의 행동과학 부서에서 범죄수사를 보조하는 수단으로써 개발되었다(Douglas et al., 1986). 1970년대 미국에서는 연쇄살인 사건의 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FBI는 연쇄살인범을 획기적으로 검거할 뿐만 아니라 범죄를 예측 및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수사기법을 제안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범죄자 프로파일링이다. 프로파일링의 근간은 범죄 현장에서 나온다. 범죄 현장에서는 용의자가 남긴 증거가 남아있으며 이러한 증거는 용의자의 특성을 드러낸다(Douglas et al., 1986). 따라서 범죄 현장에 존재하는 증거는

용의자의 행동 및 성격 특성 등을 전반적으로 그려낼 수 있어 수사를 효율적으로 개시할 수 있다(Holmes & Holmes, 2002). 이를 통해 수사관은 범죄현장을 철저히 분석하여 범죄자의 전반적인 프로파일을 추론하고 수사가 나아갈 방향을 효율적으로 정립할 수 있다. 이는 수사의 범위를 효과적으로 좁힐 수 있으며 중국, 범죄자 검거를 용이하게 한다(Pinizzotto & Finkel, 1990). 비단,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수사의 개시에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용의자를 검거한 후에도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수사관은 완성된 범죄자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범죄자에게 적합한 면담 계획을 세워 효과적인 수사면담을 이끌 수 있다(임준태, 2009; Turvey, 2002).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두 가지 유형, 즉 귀납적 프로파일링과 연역적 프로파일링으로 분류된다(Turvey, 2002). 전자는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비교함으로써 용의자의 특성과 성격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Turvey, 2002). 이처럼 귀납적 프로파일링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간 공유하고 있는 범죄적 및 성격적 특징이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이에 반해, 후자는 범죄 현장에 남아있는 증거 및 용의자 정보를 바탕으로 용의자의 특성과 성격 등 범죄자의 프로파일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Turvey, 2002). 즉, 범죄 현장 분석을 전제하여 범죄자의 특성을 추론하는 것이다.

2. 다양한 프로파일링 기법

1) 범죄자 프로파일링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범죄 현장을 근간하여 범죄자의 특징을 추론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사의 범위를 좁히고 수사의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효과적이다(Douglas et al., 1986).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① 정보 입력, ② 의사 과정 모형, ③ 범죄 평가, ④ 범죄자 프로파일 형성, ⑤ 수사, ⑥ 검거라는 총 6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효시는 범죄 현장 속 범죄자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다. 범죄 현장에 남아있는 증거(예: 범행 시 사용한 무기,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간 등)는 범죄자의 범행 시 감정 상태, 성격 및 행동 특성 등을 나타내므로

범죄자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다(Douglas et al., 1986). 범죄 현장에서 수집 가능한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자의 정보를 입력한 뒤, 의사 과정 모형을 통해 범죄자를 분류하게 된다. 범죄자 분류는 ‘범죄자가 어떤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는지’, ‘범죄자의 범행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범죄자가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걸린 시간’, ‘범죄자가 범행을 저지른 장소’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의사 과정 모형을 통해 범죄자를 분류했다면, 세 번째 단계인 범죄 평가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범행이 일어난 시간적 순서’, ‘범죄 유형’ 등을 추론함으로써 범행을 재구성한다. 이때, 수사관은 범죄자의 범행 특성이 조직적 범죄(organized crime)인지 비조직적 범죄(disorganized crime)인지를 나누어 구분한다. 전자는 구체적인 범죄를 계획하여 피해자를 특정할 뿐만 아니라, 계획된 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유형을 의미한다(Douglas et al., 1986). 이에 반해, 후자는 구체적인 범죄를 계획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범행 장소 등을 특정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유형을 의미한다(Douglas et al., 1986). 이러한 유형 구분은 범죄자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네 번째 단계는 범죄자 프로파일 형성이다. 이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를 통해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범죄자의 신체적 특성, 인종 등 사회인구학적 특징을 파악하여 수사가 나아갈 방향을 정립한다. 수사 단계는 형성된 범죄자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 지원의 단계를 의미한다(Wilson & Soothill, 1996). 수사 과정 중 범죄자의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거나 범죄자의 신원이 미확보된다면 재평가를 통해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범죄자 검거가 완료됐다면, 검거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검거 단계는 범죄자 검거 후, 면담을 통해 프로파일링의 타당성 및 유효성을 확인하는 단계를 의미한다(Douglas et al., 1986). 이때 수사관은 범죄자의 프로파일을 전반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프로파일링의 타당성과 향후 활용 계획을 점검한다.

2) 지리적 프로파일링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는 공간, 일하는 장소 등 각자의 활동 영역이 정해져 있다. 또한, 이러한 영역에는 개인의 뚜렷한 행동 패턴이 형성되며 그 패턴이 쉽게 드러난다. 이처럼 지리적 프로파일링은 개인의 활동 영역 내 행동 패턴을 프로파일링 영역에 접목함으로써 범죄자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했다. 지리

적 프로파일링은 범죄자의 공간적 행동 및 지정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활동지역, 거주지역 등 범죄자의 시공간적 특성을 추론하는 것을 의미한다(Rossmo, 1999). 이는 범죄자의 집, 직장 등과 같이 범죄자가 익숙한 활동 영역에서 범죄가 발생한다는 전제가 내재되어 있다. 지리적 프로파일링은 연쇄살인과 같이 범죄자의 행동 패턴이 두드러지는 범죄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지리적 프로파일링은 국외를 중심으로 범죄 수사에 널리 적용되고 있으며, 과학 발달을 토대로 효과적으로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Rossmo, 1999). 연구자들은 연쇄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지역의 일관성 정도를 살펴보고자 했다(Lundrigan, Czarnomski, & Wilson, 2010). 연구결과, 연쇄 성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에게서 범죄 발생 지역이 일관성 있다는 것이 발견됐다. 또한, 범죄가 그들의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확인했으며(Lundrigan et al., 2010), 이러한 특성은 연쇄 강간범에게서도 발견됐다(Canter & Gregory, 1994).

3) 최소 공간 분석

최소 공간 분석(Smallest Space Analysis, 이하 SSA)은 다차원 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procedures; MDS) 중 하나로써, 가상의 통계적 공간 안에 변인 간 상관성을 나타내는 분석 방법을 의미한다. 즉, SSA는 범죄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인(범죄 행동)을 바탕으로 변인 간 상관관계를 통해 가상의 통계적 공간 안 거리를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Canter & Heritage, 1990). 따라서 범죄 현장에서 나타난 두 변인 간 상관관계가 클수록 공간적 차원 안의 거리가 가까운 것이며(Borg & Shye, 1995), 변인 간 상관관계가 클수록 범죄 유형을 구분하기가 쉬워진다(김지영, 박지선, 박현호, 2009).

SSA에서는 적합도 계수를 통해 변인 간 상관에 대한 정확성을 나타낸다. 적합도 계수가 작을수록 공간적 차원상에 변인 간 상관성이 알맞게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범죄 현장에 나타날 수 있는 범죄 행동들을 공간적 차원 안에 나타냈을 때, 하나의 지역이 형성되며 다른 지역과 구분되어 서로 다른 범죄 유형을 나타낼 수 있다. 즉, SSA는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가 표현적 및 도구적 유형으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Salfati, 2000). 이러한 범죄자의 범행 유형 분석은 범죄자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하여 효율적인 수사에 이바지할 수 있다(Canter, 2004).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다수의 프로파일링 기법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기법들의 일차적 목적은 범죄수사를 지원하는 것이다(Holmes & Holmes, 1996). 즉, 프로파일링을 통해 범죄 현장을 분석함으로써 범죄자의 인구통계학 및 사회심리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수사가 이뤄지도록 돕는 것이다.

Ⅲ. 각국의 범죄자 프로파일링

1. 미국

FBI는 1970년대에 행동과학부(Behavioral Science Unit, 이하 BSU)를 창설한 뒤 경찰 및 FBI 요원들에게 프로파일링을 교육했다. 이후 BSU는 국립강력범죄 분석센터(National Center for the Analysis of Violent Crime, NCAVC)의 산하 기관이 되며(Turvey, 2002),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관한 연구 및 교육을 담당했다. 여러 범죄 사건을 바탕으로 프로파일링에 관한 연구 및 분석을 실시한 데이터를 경찰관이나 군인에게 제공했으며 범죄 데이터베이스, 범죄 패턴 등을 관리하는 강력범 검거 프로그램(Violent Criminal Apprehension Program, 이하 ViCAP)을 활용함으로써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효율적으로 수사에 적용하고자 했다. ViCAP는 미국에서 발생한 범죄사건의 수법, 피해자나 가해자의 인종, 성별 등 인구통계학적 요소를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김지영 등, 2009).

BSU는 1990년대부터 연구기관의 모습을 나타냈다(Turvey, 2002). BSU는 프로파일링 교육과 훈련뿐만 아니라 인간 행동을 분석 및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후 BSU는 행동 연구 및 교육부(Behavioral Research & Instruction Unit, BRIU)로 개편됨으로써 프로파일링 교육과 범죄 예방 등을 연구했다(안기남, 김정석, 2020). 이처럼 FBI에서는 범죄자의 범죄 행동을 행동과학적 측면으로 바라봄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자 한다(허경미, 2015). 최근 미국에서는 법 집행과 관련된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프로파일링을 시행하고 있다(김지영 등, 2009). 이처럼 미국 내에서는 FBI에서만 프로파일링 및 범죄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프로파일링에 관한 연구도 국가 차원을 넘어 개인이나 단체적으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미국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프로파일러가 된다. 예컨대, 미국의 프로파일러는 NCAVC의 요원이어야만 한다. 또 다른 조건은 심리학, 범죄학 등의 전공 학위가 필요하며 관련 전공에 대한 석사 이상의 학위는 선발요소에서 추가 점수가 부여된다. 또한, 수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자체시험에 합격함으로써 선발이 완료된다. 모든 과정을 거쳐 프로파일러로 선발이 되더라도, 20주 동안의 프로파일링 교육을 마친 뒤 현장에 투입된다(최규환, 2020).

2. 영국

영국의 프로파일링은 1980년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다. 영국은 1982년부터 연쇄범죄와 같은 사건에 대한 매뉴얼 작성 및 범죄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했다. 또한, 범주수사에 능통한 수사관을 대상으로 수사 훈련을 강화했으며 연구자를 통해 수사기법을 발전시켰다. 이후 영국은 1987년에 내무성 주요 수사 시스템(Home Office Large Major Enquiry System, 이하 HOLMES)을 개발함으로써 영국 전역의 범죄사건을 조회할 수 있게 하여 효율적인 범주수사에 발돋움했다. 이후 영국은 1995년에 국립 범죄학부(National Crime Faculty, NCF)를 설치함으로써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중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하였으며 중범죄분석과(Serious Crime Analysis Section, SCAS) 등을 설립하여 범주수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특수수사 작전 지원팀(Specialist Operational Support, 이하 SOS)을 창설하였다. SOS는 범죄에 관한 지식과 수사경험이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연구, 분석, 수사 조언 등을 지원했다(박현호, 오경석, 2010).

영국의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민간 수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즉, 영국은 민영에서 이루어지는 프로파일링 기업과의 경쟁에 실패함으로써 흔히 말하는 탐정(private detective, private investigator)이 발달되어 있다.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과학수사 규제관(Forensic Science Regulator, FSR)을 임명함에 따라 수사 서비스의 가격, 수사관의 자격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민영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허경미, 2015).

영국의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해서는 FSR에서 규정한 프로파일링 프로그램과 영국심리학회(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BPS)가 인정하는 심리학 과목을

이수할 필요가 있으며 심리학 석사 이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관문을 거친 프로파일러는 프리랜서 또는 전임으로 경찰서, 교도소, 형사사법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다(허경미, 2015). 예컨대, 영국 프로파일러는 교도소 내에서 수감자에게 사회복귀 프로그램 및 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영국 프로파일러들은 교정시설에서 많은 활동을 보이며 형사사법기관 내에서 범죄자의 행동 등을 연구한다.

3. 캐나다

캐나다의 프로파일링은 경찰 조직 내에 있는 행동과학부(Behavioural Sciences Branch, 이하 BSB)에서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BSB에서는 강력 범죄 연관분석 시스템(Violent Crime Linkage Analysis System, 이하 ViCLAS), 거짓말 탐지(Truth Verification), 지리적 프로파일링(Geographic Profiling) 등의 수사도 지원하고 있다(임준태, 2009).

ViCLAS는 물리적, 시간적 제한을 뛰어넘어 범죄자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는 프로파일링 업무를 담당하는 프로그램으로써 각 주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된다(박현호, 오경석, 2010). ViCLAS는 범죄수사에 있어 활용도가 높고 언어적 문제도 극복할 수 있어 많은 나라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임준태, 2009). 또한, 캐나다 경찰 조직은 범죄수사에 있어 ViCLAS의 활용도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경찰관들에게 ViCLAS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가 과정은 범죄수사에 대한 이해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ViCLAS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임준태, 2009). ViCLAS를 다루는 전문가는 사건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법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ViCLAS 전문가는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선발된다. 즉, 전문가는 최소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하며 범죄 그리고 컴퓨터에 대한 기본 소양을 지녀야 한다(김지영 등, 2009).

4. 한국

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서울지방경찰청에 범죄분석실을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과학수사과에 심

리학자와 정신분석 전문의로 구성된 범죄 심리분석 자문위원회를 결성했다(박현호, 오경석, 2010). 또한, 2004년에는 과학수사요원 중 범취면 수사, 거짓말 탐지 요원 등과 같은 수사관을 배출함으로써 강력범죄분석팀(Violent Crime Analysis Team, VCAT)을 구성하였다(김지영 등, 2009).

앞서 살펴본 미국, 영국, 캐나다와 달리 국내에서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적 범죄분석 시스템(Scientific Crime Analysis System, SCAS)에 범죄 관련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안기남, 김정석, 2020). SCAS는 미제 사건과 검거 사건으로 나누어 자료가 관리된다. 전자의 경우, 범죄자에 대한 분석이 어려우므로 피해자와 관련된 사실 정보들을 SCAS에 저장한다. 이때, 프로파일러의 범죄분석 결과는 종합분석 보고서에 첨부되어 저장된다(김지영 등, 2009). 후자의 경우, 전자와 달리 범죄자에 대한 기본정보와 사건 관련 내용이 저장된다. 또한, 프로파일러의 프로파일링 결과는 정리된 범죄 사실과 비교 분석되어 저장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프로파일러는 범죄수사의 일선에서 활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강력범죄 사건을 바탕으로 사건 해결에 진전이 없거나 사건이 미궁에 빠졌을 때 프로파일링이 활용될 뿐이다. 물론, 프로파일러가 일선에 활용될 수도 있다. 이때 프로파일러는 사건 현장을 살펴보며 사건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한다. 이후 사건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며 완성된 보고서를 SCAS에 입력한다. 이후 프로파일러는 피해자, 참고인 평가 그리고 법의학적 평가 등을 거쳐 2차 현장분석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본격적인 프로파일링을 시작한다.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중요한 사건의 경우 다수의 프로파일러가 투입될 수 있다. 따라서 사건에 투입된 다수의 프로파일러가 논의를 함으로써 3차 현장분석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김지영 등, 2009). 범죄현장 분석 외에도 우리나라는 2009년 4월부터 지리적 프로파일링에 관한 연구와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신상화, 2009).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활용하여 범죄 발생 장소와 범죄자의 거주지 등 범죄자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범죄자의 범죄 정보와 함께 아우러져 용의자의 행동적 특성 및 활동 반경 등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신상화, 2009).

우리나라의 프로파일러 채용은 연쇄 살인범 유영철 사건을 토대로 2005년부터 시작됐다(표 1). 당시 채용된 국내 프로파일러는 범죄 분석뿐만 아니라, 임상심리적 관점에서 범죄를 바라볼 수 있는 전문가(심리학, 사회학 등의 전공자)를 필두로 채용이 이루어졌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7회에 걸쳐 프로파일

리(범죄분석요원)가 채용됐으며 약 35명이 각 지방경찰청에 배치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범죄수사에 적용된 지 약 15년이 됐다. 2005년 이후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실무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이진숙 외, 2020). 프로파일러들은 강력사건 발생 시,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범인 검거 이후에도 프로파일러가 작성한 범죄 수사 보고서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으로 인정되는 등 판결의 근거가 되는 사례가 생기기 시작했다(이진숙 외, 2020). 또한, 수사 지원으로 사건이 종결된 후, 지방경찰청의 프로파일러들이 모여 피드백을 갖는 등 프로파일링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이진숙 외, 2020). 이를 통해 범죄자 면담, 범죄분석 및 수사 지원, 진술 분석 등 수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최규환, 2020).

<표 1> 국내 프로파일러(범죄분석요원) 채용 현황

연도	2005	2006	2007	2014	2015	2016	2017	2021
채용 인원	16	14	10	6	6	4	5	8
계급 (분과)	경장 (수사 경과)							

출처: 경찰청. 연도별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IV. 우리나라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문제점

1. 조직·시스템 운용과 인력 문제

우리나라 범죄자 프로파일링 제도가 가장 먼저 보완해야 할 것은 운용적 측면이다(김지영 외, 2009). 우리나라의 프로파일링 제도와 관련된 국내 연구에

따르면, ‘체계적 실무 지원 체제의 미흡’, ‘타업무 병행’ 등 여러 문제로 인해 프로파일링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않음을 나타냈다(신상화, 이동희, 2020).

비단, 운용적 측면과 아울러 인력 운용 문제도 보완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범죄분석요원들은 프로파일링이 개입되어야 하는 범죄사건을 인력 지원 없이 분석하고 있다. 또한, 범죄사건 분석 외에도 타 업무를 병행함에 따라 범죄사건에 집중을 쏟지 못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 지원의 부재, 업무 분산 등의 인력 운용 문제는 수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범죄사건 분석에 차질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와 달리,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의 경우 심리학 전공의 프로파일러뿐만 아니라 전직 수사관 등 여러 인력이 수사 과정에 개입되어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김한균 외, 2018).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프로파일링 업무와 관련하여 부족한 인력을 보충할 추가적인 자원을 비롯해 체계적인 수사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2.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대한 일선 경찰관의 이해 부족

앞서 제시한 첫 번째 문제 외에도 우리나라 프로파일링의 또 다른 문제는 프로파일링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수사관들은 프로파일링이 정확히 어떠한 수사기법인지 혹은 경찰 수사 등 경찰 활동에 어떻게 유의미한 지원을 하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관들은 프로파일링에 대한 지원을 받지 않는 사례가 존재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무지한 경우가 발견됐다(신상화, 이동희, 2020).

또한, 프로파일링의 지원을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소수의 사례를 바탕으로 프로파일링의 효과성을 일반화하여 발생하는 오해도 존재한다(안기남, 김정석, 2020). 즉, 프로파일러, 프로파일링 기법 등이 수사 종결에 크게 이바지했음을 인지하여 프로파일링에 대한 오해가 발생한 것이다. 그 결과, 수사관들은 프로파일링 기법이 범인을 정확히 밝혀내는 기법으로 오인하여 수사 과정에서 프로파일링이 큰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비판하는 경우도 존재한다(곽대경, 2001). 이는 프로파일링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의 시발점이 될 수 있

으며 프로파일링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오해와 불신은 조직 내 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 과정에 치명적인 결함을 나타낼 수 있다(박지선, 최낙범, 2012). 따라서 원활한 수사 지원과 수사의 효율성 등 효과적인 범죄수사를 위해 프로파일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3. 실효성에 대한 의문

앞서 서술한 것 외에도 프로파일링에 대한 문제는 효과성 측면에서도 나타났다. 이와 관련되어 일부 경찰관들은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효과가 대중의 인식이나 대중매체에서 비추는 것에 비해 다소 과장되어 있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남궁현, 심희섭, 2015). 또한, 프로파일링이 국내에 소개된 후 흥미로운 소재로 TV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등 잘못된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가 존재한다(박현호, 오경석, 2010). 이는 대중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중매체를 통해 전파된 오해는 경찰관들에게 프로파일링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으며 무리한 성과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프로파일링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경찰관들은 프로파일링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등 업무에 부담을 가할 수 있다(김지영 외, 2009). 그 결과, 효율적인 수사 지원, 범인의 특성에 맞는 면담 계획 설정 등을 프로파일링의 업무로 생각하지 않고, 상급 기관이 관여하는 범죄사건 등과 같은 태도로 연결될 수 있다(신상화, 이동희, 2020).

또한, 우리나라 프로파일러들의 의견 중에는 범죄자 프로파일링과 관련 없는 기타 업무의 과중한 부과로 인한 강한 불만이 있었으며,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위한 훈련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존재하였다(박현호, 오경석, 2010).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할 시간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타 업무까지 병행하므로 범죄유형에 따른 적합한 프로파일링을 시행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도 발견됐다(김지영 외, 2009).

V. 우리나라 프로파일링의 개선점

1. 조직·시스템 개편과 인력 채용

지방청별 소수 인력 분산배치 및 프로파일링 외 기타 업무 병행 등 악조건의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프로파일링을 통한 수사 지원은 ‘강력사건’에 국한되어 있어 기타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 지원이 제한된 상황이다. 이는 프로파일링의 유용성을 떨어트리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다. 프로파일링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관들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수사관들의 실무 경험을 통해 긍정적 인식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즉, 프로파일링의 수사 지원을 받음으로써 수사의 방향 설정 및 면담 계획 등 수사에서의 유용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파일링의 폭넓은 활용과 수사 지원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수사 지원을 하기에 부족한 전문인력,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 등은 수사 지원의 의미를 퇴색하게 만든다. 즉, 프로파일링을 활용하기에 열악한 환경은 수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이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프로파일링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프로파일링이 수사관들에게 수사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 문제를 선결할 필요가 있으며(신상화, 이동희, 2020), 범죄수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사 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곽대경, 2001). 수사 인력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면, 효과적으로 범죄사건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최천근, 2011). 그러므로 프로파일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보충되어야만 경찰수사에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신상화, 이동희, 2020).

2. 전문적인 인재 고도화 개발 및 훈련

프로파일러의 신입교육과정은 초반에 비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범죄분석 실무, 범죄심리학, 피의자 면담기법 등 필수적인 이론 교육을 강화하고 실무 훈련 과목을 보완하였지만, 여전히 현장실습은 제한적이다(박지선, 최낙범, 2012). 특히 이들이 현장에 배치된 후에 프로파일러의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다만, 채용 당시에 받았던 교육을 보충하는 정도의 추가적인 교육을 2년제로 시행하고 있다. 예로 들어

2013년의 경우, 경찰 수사 연수원에서 기존의 프로파일러에 대한 범죄분석과정 교육을 2회 실시하였는데 교육 수혜 대상자를 40명의 범죄분석 특채자로만 한정했으며 교육시간 또한 1주 35시간에 그쳐 형식적으로 진행됐다(허경미, 2015).

증가하는 범죄자들의 범죄 경력과 발전하는 범죄 기술에 따라 경찰 프로파일러 또한 최신의 범죄 사건 사례를 포함한 전문적, 반복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허경미, 2015). 그 외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각 대학원 과정에서 프로파일링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추가적으로 개설하고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신입교육과 재교육을 함으로써 현행 프로파일러 인력을 위한 교육의 장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김지영 외, 2009). 구체적으로, 매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고도의 집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소규모 인원의 프로파일러 강의에 다수의 경찰관이 참여하여 여러 강력범죄에서 프로파일링으로 수사를 지원받은 경험을 설명하고, 범인 검거 등 사건 종결이 어떻게 됐는가에 관한 토론과 분석의 장을 여는 것이다(허경미, 2015). 이는 경찰과 프로파일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적 교류의 장으로써 일부 경찰관이 가지는 프로파일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타파할 수 있을 것이며 서로의 업무 영역과 고충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프로파일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해소

프로파일링은 수사의 범위와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수사를 지원하는 데 효과적이다(Douglas et al., 1986). 그러나 국내 경찰관들은 프로파일링의 본질적인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경찰관들은 프로파일링을 수사 지원의 의미보다 ‘범인 검거’의 의미로서 이해하고 있으며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을 때 실효성에 대해 비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곽대경, 2001).

프로파일링의 실효성 대한 부정적 견해, 프로파일링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여러 문제는 범죄수사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 프로파일링에 대한 부정적 의문은 범죄수사의 성과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사건 종결에 총체적 난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박지선, 최낙범, 2012). 따라서 그러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경찰관들에게 프로파일링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부정적 의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파일링의 결과물이 범인 검거에 필요한 독립성 있는 증

거로 간주하기보다 수사 방향 설정 등과 같은 수사 판단에 유용하다는 인식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신상화, 이동희, 2020).

이진숙 등(2020)은 프로파일링을 통해 수사 지원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경찰관 103명을 대상으로 프로파일링의 실효성 여부를 조사했다. 연구결과, 경찰관들은 프로파일링의 도움 정도, 정확도, 재의뢰 의향 등 프로파일링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이진숙 외, 2020). 프로파일링의 실효성에 관한 경찰관들의 긍정적 반응은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발견된다(정세중, 2014).

이처럼 프로파일링을 통해 수사 지원을 받은 경찰관들의 반응은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프로파일링을 강력범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아동학대, 성범죄 등 다양한 범죄에 쓰임으로써 그 활용도를 넓힐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프로파일링에 대한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이 갖는 오해를 풀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프로파일링의 오해로 시작해 자리 잡은 프로파일링에 대한 부정적 의문이 해소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VI. 결론

프로파일링의 비교적 짧은 역사뿐만 아니라 2000년대 초반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급박하게 자리 잡은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여러 시행착오를 겪게 됐다. 이러한 시행착오는 프로파일링 도입 당시의 기대와 달리 수사관들에게 프로파일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제공했을 것이다. 이로 인해 프로파일링에 대한 기대와 수사에서의 활용이 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과학수사의 발전과 함께 수사현장에서의 프로파일링 활용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통해 범죄자의 공간적 행동 및 지정학적 특성을 유의미하게 추론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발견되고 있다(노기윤, 이창배, 2018; 신상화, 2009; 임준태, 이도선, 2009). 또한, 최근 범죄분석요원 채용 시 심리학, 사회학, 범죄학, 통계학 등과 같은 다양한 학문적 소양을 지닌 인원을 고루 선발하고자 한다. 이는 범죄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 및 토의를 이끌 수 있으며 프로파일링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일관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아 증명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최규환, 2018). 그러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프로

파일링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 프로파일링이 법정에서도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프로파일링의 유용성의 경우 프로파일링을 통해 수사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프로파일링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60%가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통해 수사에 도움을 받았으며 약 70%가 향후 프로파일링을 수사에 재활용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냈다(정세중, 2014). 따라서 프로파일링에 관한 연구를 함으로써 범죄자를 효율적으로 검거할 뿐만 아니라, 공판단계에서도 활용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 우리나라 프로파일링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것은 경찰청 내부와 연관되어 있어 실상을 반영하기 힘들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함으로써 프로파일링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얻으면 더욱 좋은 연구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실제 범죄분석요원과 우리나라 프로파일링의 상황 및 현주소와 관련된 인터뷰를 함으로써 질적 분석을 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프로파일링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의 프로파일링은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수사환경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비전이 농후하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프로파일링에 대한 인식 및 환경적 변화에 발맞춰갈 뿐만 아니라 전문성 있는 범죄분석요원의 양성 및 인력 확보 등의 개선은 범죄수사의 발전에 바람직한 방향을 이끌 것이다. 향후 개선된 프로파일링을 통해 다양한 재판에서 증거능력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활용되는 등 프로파일링의 활용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곽대경. (2001). “경찰수사를 위한 범죄심리연구의 활용방안”, 「한국경찰학회보」, 3(1): 1-21.
- 김지영·박지선·박현호. (2009). “연쇄성폭력범죄자 프로파일링과 프로파일링 제도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3-333.
- 김한균·윤해성·김경찬·박은정·김기범·권양섭·이관형·김면기·유승진·박준영·김대원·박웅신·이경렬·정배근·조은경·이재웅·박희정. (2019).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 (II)”,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35.
- 김한균·윤해성·박운석·김면기·유승진·정교일·이덕규·이창훈·권양섭·조은경·김민지·이윤정·김대원·이원상·이경렬·차종진. (2019).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 (I)”,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893.
- 남궁현·심희섭. (2015). “범죄자 프로파일링: 과학인가 과장인가?”, 「형사정책연구」, 26(3): 209-238.
- 노기윤·이창배. (2018). “접합 분석(Conjunctive Analysis)을 적용한 폭력범죄 발생의 지리적 프로파일링”,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7(4): 227-248.
- 박지선·최낙범. (2012).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대한 인식과 발전 방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6): 413-423.
- 박현호·오경석. (2010). “범죄 프로파일링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경찰 범죄분석요원 및 기존 수사관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9(2): 59-88.
- 신상화·이동희. (2020). “범죄자 프로파일링 유용성 인식 평가: 경찰관 대상 실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34(2): 129-161.
- 신상화. (2009). “연쇄 강간범에 대한 지리적 프로파일링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4(2): 125-160.
- 안기남·김정석. (2020). “범죄자 프로파일링 효용성 논의에 대한 고찰”, 「시큐리티연구」, 65: 149-172.

- 이진숙 · 이주현 · 최규환 · 공은경 · 김성혜 · 이상경 · 한수영 · 신경아 · 조남경 · 박준희 · 한상아 · 이진아. (2020). “프로파일링 효용성의 수사실무적 평가: 프로파일링 수사기법 사용자를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20(3): 201-226.
- 임준태. (2009). “연쇄방화범 프로파일링과 이동특성”,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4): 369-402.
- _____. (2009). 「프로파일링」, 대영문화사.
- 임준태 · 이도선. (2009).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통한 연쇄강력범죄의 공간적 특성분석”, 「한국경찰연구」, 8(4): 199-224.
- 정세중. (2014).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효용성 평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14): 686-694.
- 최규환. (2018).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증거 활용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32(3): 405-436.
- _____. (2020). “우리나라 범죄자 프로파일링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최천근. (2011). “치안서비스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경찰의 인적자원 배분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지출수요 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3): 359-394.
- 허경미. (2015). “범죄 프로파일링 제도의 쟁점 및 정책적 제언”, 「경찰학논총」, 10(1): 205-234.

〈국외문헌〉

- Ainsworth, P. (2001), *Offender profiling and crime analysis*, London: Willan Publishing.
- Borg, I. & Shye, S. (1995), *Facet theory: Form and content*,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Canter D. (2004), “Offender profiling and investigative psychology”, *Journal of Investigative Psychology and Offender Profiling*, 1: 1-15.
- Canter, D. V., & Gregory, A. (1994), “Identifying the residential location of rapists”, *Journal of the Forensic Science Society*, 34(3): 169-175.
- Canter, D., & Heritage, R. (1990), “A multivariate model of sexual offence behaviour: Developments in ‘offender profiling’”, *The Journal of*

- Forensic Psychiatry*, 1(2): 185-212.
- Douglas, J. E., Ressler, R. K., Burgess, A. W., & Hartman, C. R. (1986), "Criminal profiling from crime scene analysis",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4(4): 401-421.
- Holmes, R. M., & Holmes, S. T. (1996), *Profiling violent crimes: An investigative tool*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Holmes, R., & Holmes, S. (2002), *Profiling Violent Crimes: An Investigative Tool*, Sage Publications, Thousands Oaks, California.
- Lundrigan, S., Czarnomski, S., & Wilson, M. (2010), "Spatioal and environmental consistency in serial sexual assault", *Journal of Investigative Psychology and Offender profiling*, 7(1): 15-30.
- Muller, D. A. (2000), "Criminal profiling: Real science or just wishful thinking?", *Homicide studies*, 4(3): 234-264.
- Pinizzotto, A. J., & Finkel, N. J. (1990), "Criminal personality profiling", *Law and Human Behavior*, 14(3): 215-233.
- Rossmo, D. K. (1999), *Geographic profiling*. CRC press.
- Salfati, C. G. (2000), "The nature of expressiveness and instrumentality in homicide: Implications for offender profiling", *Homicide studies*, 4(3): 265-293.
- Snook, B., Haines, A., Taylor, P. J., & Bennell, C. (2007), "Criminal Profiling Belief and Use: A Study of Canadian Police Officer Opinion", *Canadian Journal of Police and Security Services*, 5(3): 169-179.
- Turvey, B. E. (2002), *Criminal Profiling: An Introduction to Behavioural Evidence Analysis* (2nd ed.), London: Academic Press.
- Wilson, P., & Soothill, K. (1996), "Psychological profiling: red, green or amber?", *The Police Journal*, 69(1): 12-20.

【Abstract】

A Review on the Development and Problems of Criminal Profiling in Korea

Jaehoo Kim^{*}
Munyeong Kim^{**}
Eunkyung Jo^{***}

In this study, unlike the English and American legal system where profiling has developed, we wanted to examine some problems of profiling in Korea. Through this regard, we presented the direction that Korea's profiling should go forward and wanted to express expectations for future use of profiling. Specifically, problems with Korea's profiling have been identified as problems with organization and system operations and manpower, lack of front-line police understanding of profiling, and the effectiveness of profiling. Based on these problems, we wanted to present improvements in Korea's profiling. First, improvements regarding reorganization of organizations and systems and recruitment of human resources were proposed. Second, we present professional talent advancement development and training. Finally, we proposed a way to mitigate the negative perception of profiling through methods such as active utilization of profiling in the investigative field. Finally, we present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future profiling.

Key words: criminal profiling, profiler, profiling methodology, improvements for criminal profiling

* Master's Student, College of Police and Criminal Justice, Dongguk University-Seoul(first author)

** Master's Student, College of Police and Criminal Justice, Dongguk University-Seoul(co-author)

*** Professor, College of Police and Criminal Justice, Dongguk University-Seoul (corresponding author)

청소년 재산범죄 피해에 미치는 영향 요인

김동현 · 신소라*

【요약】

청소년의 범죄피해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문제이다.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범죄피해 유형에 관하여 연구하였지만 범죄피해 유형 중 재산범죄 피해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소년의 재산범죄피해는 그 규모가 성인의 재산범죄피해보다 적지만 청소년의 시기가 중요한 시기이고, 이 시기에 당하는 범죄피해는 사소한 피해라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인 학교 및 주거지의 무질서가 청소년 범죄피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청소년의 범죄피해 유형 중 재산범죄 피해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청소년의 재산범죄 피해의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2014 청소년 범죄피해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학교 및 주거지 환경의 무질서가 청소년의 재산범죄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학교 및 주거지 주변 환경의 무질서가 청소년의 재산범죄 피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론을 바탕으로 학교 내에서는 학교 CPTED적 요소를 강화하고 주거지 주변에 경찰의 순찰활동을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 교육을 통해 재산범죄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청소년, 범죄피해, 재산범죄, 지역사회 무질서, 깨어진 창 이론

* 동국대학교(서울)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석사과정(제1저자)

**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교신저자)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논의
III. 연구 방법
IV. 분석 결과
V. 결 론

I. 서 론

청소년의 범죄피해는 현재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문제이고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각해지고 흉악해져가고 있다. 청소년의 범죄피해는 청소년이라는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인생에 있어 한 개인에게 큰 변화와 성장을 겪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범죄피해는 개인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김동현, 2021).

청소년 범죄피해의 심각성으로 인해 청소년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많은 선행연구들이 청소년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고수연·배성만, 2019; 김동현·곽대경, 2021; 김중곤·심희섭, 2018; 김지훈·이명우·박한호, 2017; 신소라·조운오, 2015; 이상훈·곽대경·심혜인, 2014; 정주섭, 2019; ; 조운오·이미정, 2013). 대부분의 연구들은 청소년의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가정의 역할로 파악하였으며 가정에서의 학대피해가 청소년의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연구들은 청소년의 폭력범죄 피해, 성범죄 피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산범죄 피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다. 물론 성범죄 피해나 폭력범죄 피해 역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임은 틀림없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소년 시기의 특성으로 인해 이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범죄피해 유형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재산범죄 피해는 대검찰청의 「2020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9년 청소년의 재산범죄 피해자 수는 총 5,579명으로 나타나 폭력범죄 피해자 수 5,523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흉악범죄 피해자 수 2,659명 보다 높게 나타나 가장 높은 피해자 수를 보이는 범죄 유형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재산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산범죄 피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범죄피해를 예측하는 요인은 많은 요인들로 설명되고 있지만 가장 많은 설득력을 갖고 있는 요인은 부모의 역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은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고 학업활동이나 여가활동으로 학원을 가는 등 학교나 집 주변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학교와 주거지 주변의 환경역시 범죄 피해를 예측할 수 있다. Wilson & Kelling(1982)이 설명한 ‘깨어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무질서가 범죄를 예측한다고 설명한다.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무질서가 만연할수록 범죄에 대한 비공식적 통제가 약화되고 이로 인해 범죄가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학교나 주거지 주변의 무질서가 만연하면 청소년이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이봉행, 2014).

따라서 이 연구는 Winson & Kelling의 깨어진 유리창 이론을 근거로 그동안 연구가 부족하였던 재산범죄 피해를 대상으로 주거지 및 학교 주변 환경의 요인이 재산범죄 피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여 주거지 및 학교 주변의 부정적 환경의 영향으로 재산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깨어진 유리창 이론

깨어진 유리창 이론은 James Q. Wilson과 George L. Kelling이 1982년 발표한 ‘깨어진 유리창(Broken Window)’ 논문에 의해 처음 등장하였다. Willson & Kelling 따르면 지역사회에 방치되어 있는 무질서가 해당 지역이 제대로 감독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만들게 되고 이로 인해 중대한 범죄라도 어려움 없이 실행 가능하다는 인식을 초래한다고 설명한다. 즉, 지역사회가 무질서한 상태

로 방치되어 있으면 해당 지역이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으로 확산되어 결과적으로 범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Wilson et al, 1982).

이론을 설명하면서 Wilson & Kelling은 무질서의 형태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그들은 무질서의 형태를 물리적인 면과 행동적인 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먼저, 물리적인 무질서는 낙서, 쓰레기, 깨어진 유리창 등 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낙후된 환경 등을 설명하였고, 행동적인 무질서는 노상방뇨와 같은 경범죄, 청소년들의 무례한 태도, 불량배들의 행패 등 일반시민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지역사회 특징을 포함하였다. 즉, 이러한 물리적인 무질서와 행동적인 무질서가 만연하고 경미한 범죄들이 처벌받지 않을 때 지역사회 내에 범죄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김연수, 2016).

깨어진 유리창 이론은 1969년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Philip Zimbardo의 실험연구가 토대가 되어 발전한 이론이다. 연구는 지역의 비공식적 통제가 강하고 부유층 거주지인 캘리포니아주 Palo Alto 지역과, 지역의 비공식적 통제가 약하고 빈민층 거주지인 Bronx 지역의 거리에 번호판이 제거된 차량의 본 네트를 열고 각각 주차시켜 각 지역 주민들의 파괴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Bronx에 주차된 차량은 10분도 지나지 않아 파괴되기 시작하였지만, Palo Alto에 주차된 차량은 1주일 동안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 이 후 Zimbardo는 Palo Alto 지역에서 통제되지 않은 파괴행위가 주민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지 파악하기 위해 망치로 차를 내려쳤고, 이후 다른 사람들이 합세하여 자동차를 파괴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를 보호해주는 통제력이 무너지면, 파괴 행위는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이는 깨어진 유리창 이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이봉행, 2014).

따라서 Wilson & Kelling은 깨어진 유리창 이론을 통하여 경미한 범죄 행위가 만연하고 방치되면 공동체가 해체되며 더 중대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무질서를 해결하여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후 1994년 뉴욕의 경찰국장으로 취임한 William Bratton은 깨어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하여 뉴욕의 무질서, 경미한 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였고 이에 따라 뉴욕시의 범죄율은 약 40% 감소하였으며 폭력범죄는 51%, 살인은 72%나 감소하여 깨어진 유리창 이론은 지지를 받게 되었다(이기현, 2016),

깨어진 유리창 이론에 따르면 무질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통제능력을 붕괴시

키고 통제능력이 붕괴된 지역사회는 범죄에 취약하다고 설명한다(이기현, 2016). 그 중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주거지 및 학교 주변 환경의 무질서 인식은 앞서 설명한 무질서 유형인 물리적인 무질서와 행동적인 무질서로 설명된다. 따라서 인식된 학교나 주거지역 주변의 무질서가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여러 범죄 유형 중 그동안 연구가 되지 않았던 재산범죄 역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을 종합하여 주거지 및 학교 주변 환경과 재산범죄 피해의 관계에 대입해보면 청소년들이 많이 활동하는 학교나 주거지 주변의 환경에 무질서가 많이 존재할수록 그 지역의 통제가 약화되고 재산범죄 피해와 같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2. 주거지 및 학교 주변 환경과 재산범죄 피해의 영향 관계

1) 청소년 재산범죄 피해 현황

기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청소년의 성범죄 피해나 폭력범죄 피해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재산범죄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자 수 또한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은 대검찰청의 「2018 범죄분석」, 「2019 범죄분석」, 「2020 범죄분석」에 따른 청소년의 재산범죄 피해와 강력범죄(흉악)에 속해있는 강도 범죄 피해자 현황이다. 피해자 연령은 만 7세부터 만 15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강도 범죄가 폭행이나 협박 따위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됨에 따라 재산범죄로 포함하였다. <표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청소년의 재산범죄 피해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8년에는 감소하였다가 2019년 다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강도범죄 피해의 경우 10건 이상으로 매년 나타나고 있으며 재산범죄 피해 중 절도범죄 피해와 사기범죄 피해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청소년 재산범죄 피해자 수 현황

연도	재산범죄	강도범죄	유형
2017	5,593	14	절도 : 3,345 사기 : 1,049
2018	5,057	11	절도 : 3,244 사기 : 949
2019	5,675	11	절도 : 3,761 사기 : 925

출처 : 대검찰청 「2018-2020 범죄분석」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을 통해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청소년의 재산범죄 피해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산범죄 피해는 단순히 청소년에게 재산상의 피해의 결과만을 가져오는 범죄가 아니다. 미국의 범죄 피해자 대책국(The Office for Victims of Crime, 1998)에서는 재산범죄 피해의 심각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설명에 따르면 재산범죄 피해는 피해자가 피해사건으로 인해 피해 원인을 자신의 잘못으로 돌려 수치심, 죄책감, 자기 비난을 행하게 되며 이 후 또 다른 피해를 당할까 두려운 마음에 자신을 고립시키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의 경험은 개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보다 더 큰 피해를 야기 시키게 된다(G. Dorner, 2011). 또한 사기범죄 피해의 경우 타인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대인관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청소년기 이후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성장기에 놓여있고 감정이 급격하게 변화하여 자신의 내적요소들을 발달시키는 시기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피해나 신뢰 상실로 인한 사회 미발달 문제는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큰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동현, 2021).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를 미칠 수 있는 재산범죄 피해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청소년 재산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선행연구

기존의 연구들은 지역사회 무질서가 범죄피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먼저, 김준호 외(2010)의 연구는 한국의 범

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는 2008년 한 해동안 개인이 당한 범죄피해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개인수준 변인, 지역수준 변인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 중 지역수준 변인에서 지역사회 무질서가 측정되었고 지역사회 무질서는 개인의 폭력 범죄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보다는 개인적 특성인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소득수준 등과 상호작용하여 폭력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개인의 폭력범죄의 원인을 밝혀냄으로써 많은 의의를 갖고 있지만 범죄피해를 조사할 때 재산범죄피해에 절도만을 포함시켜 다른 유형의 재산범죄피해를 연구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준범 외(201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가출과 다중피해의 관계에서 지역사회 무질서의 가중효과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사회 무질서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모든 범죄피해의 유경험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 무질서의 가중효과를 살펴보면 가출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이 지역사회 무질서 증가에 따른 다중피해 가능성은 3.6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최대 6.0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무질서가 청소년 범죄피해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청소년의 비행행위에 관하여 연구한 정진성(2008)의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지역사회의 특성이 학교폭력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는 서울과 부산 소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가해 행위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그 요인들을 개인적 특성, 학교적 특성, 지역사회 특성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중 지역사회 특성에서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에 대해 측정하였고 연구결과 무질서가 만연할수록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질서가 청소년의 부정적 행위를 부추기고, 학교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다른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범죄 이외에 온라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와 지역사회 무질서에 관하여 연구한 남재성 ·장정현(2011)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에 관한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무질서가 청소년 사이버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의 사회적·물리적 무질서는 청소년 사이버폭력 피해를 예측하지 못하였지만 사이버폭력이 지역사회가

아닌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인범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박승훈(2010)의 연구에서는 북미 워싱턴 주의 시애틀을 대상으로 강력범죄와 재산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의 물리적 환경특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근린의 물리적환경은 강력범죄보다 재산범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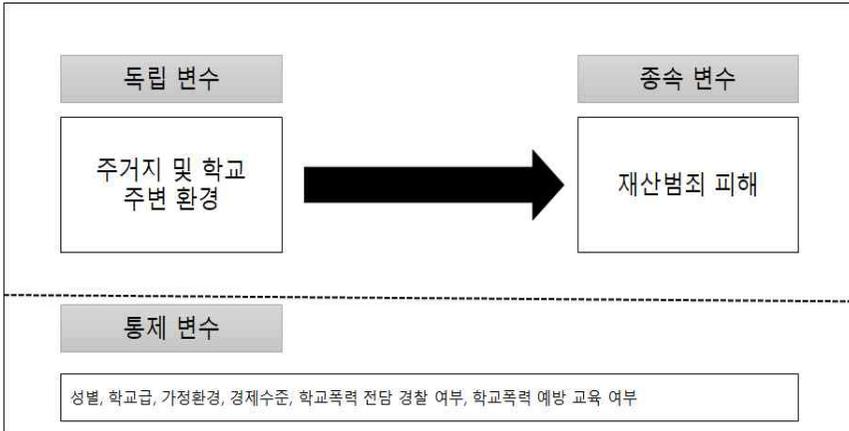
비교적 적은 수의 연구가 지역사회 무질서와 범죄의 관계에 관하여 연구하였지만 선행연구를 통해 지역사회의 무질서는 범죄피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박승훈(2010)의 연구에서 국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무질서가 강력범죄보다 재산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발견한 것에 따라 국내 역시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진다. 또한 기존의 국내 연구들은 재산범죄피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폭력범죄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재산범죄 피해의 결과가 심각함에 따라 청소년기 재산범죄 피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산범죄 피해의 영향요인을 지역사회 무질서 요인으로 선정하여 지역사회 무질서 정도에 따라 재산범죄 피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및 가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주거지 및 학교 주변 환경이 청소년의 재산범죄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이 연구의 최종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즉, 청소년의 주거지 및 학교 주변 환경의 무질서 정도가 재산범죄 피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2.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이 연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청소년 범죄피해조사 2014’ 연구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사는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총 7,109명이 조사되었다. 연구에서 조사된 주거지 및 학교 주변 환경, 재산범죄 피해 경험여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결측이 존재하지 않아 최종분석에 총 7,109개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3. 주요변수

1) 청소년 재산범죄 피해 현황

이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활용되는 청소년의 재산범죄 피해는 설문지에서 지난 1년 동안 피해를 당한 경험에 대한 질문으로 “학교 안이나 밖에서 누군가에게 위협당해 여러분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까?(강도), 학교 안이나 밖에서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돈이나 물건을 도난당한 적이 있습니까?(절도), 학교 안이나 밖에서 누군가에게 속아서 여러분의 돈이나 물건을 사기당한

적이 있습니까?(사기), 학교 안이나 밖에서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돈이나 물건을 소매치기 당한 적이 있습니까?” 의 총 4문항으로 ” 1=없다 “, ” 2=있다 “로 측정되었다. 문항을 각각 합산하여 활용하였으며 값이 클수록 재산범죄 피해가 큰 것으로 측정하여 청소년 재산범죄 피해 수준을 측정하였다.

2) 주거지 및 학교 주변 환경

이 연구의 독립변수인 주거지 및 학교 주변 환경에 관한 측정은 총 16문항으로 “우리 동네에는 불량배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학교에는 비행청소년들이 많다, 우리 학교주변에는 불량배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자주 가는 곳에는 불량배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동네에서는 금품갈취, 절도, 폭행 등의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 우리 학교에서는 금품갈취, 절도, 폭행 등의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 등”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청소년의 주거지 주변, 학교 주변의 물리적 무질서와 유해환경, CCTV 및 경찰서 여부 등을 측정하였다. 측정은 Likert식 4점 척도로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 로 측정되었다. 문항 중 “우리학교 주변에는 CCTV 나 경찰지구대(파출소), 경찰서가 있다, 우리 학교주변에는 순찰중인 경찰이나 경찰차를 자주 볼수 있다” 의 역채점 문항이 존재하여 역코딩하여 합산한 뒤 값이 클수록 주거지 및 학교 주변 환경의 무질서 정도가 큰 것으로 측정되었다.(Cronbach’ s α =.933)

3) 통제 변수

이 연구의 통제변수로는 성별, 학교급, 가정환경, 경제수준, 학교폭력 전담경찰 여부, 학교폭력 예방 교육 여부의 변수를 활용하였다. 성별은 “0=여자”, “1=남자” 로, 가정환경은 부모 여부에 따라 “0=기타”, “1=양부모 가정” 으로, 학력은 “0=고등학생”, “1=중학생” 으로 더미 변수화 처리하였으며 학교폭력전담경찰 배치 여부와 학교폭력 예방 교육 여부 또한 “0=없다”, “1=있다” 로 더미 변수화하여 처리하였다. 가정의 경제수준은 “1=100만원 미만, 2=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3=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5=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6=3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 7=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8=500만원 이상” 으로 측정되어 값이 높을

수록 경제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분석 방법

이 연구는 청소년의 주거지 및 학교 주변 환경과 재산범죄 피해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에는 SPSS 25.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자인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 변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 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이 후, 최종분석으로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IV. 분석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변수의 특성

1) 재산피해 경험 유무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특성

먼저,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재산범죄 피해를 어떠한 유형의 재산범죄 피해라도 당한 경험유무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일반적인 특징과 주요 변수의 특징에 대하여 기술통계 분석, 교차분석, 그리고 평균비교 분석을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이번 연구의 통제변수로 활용되는 성별과 재산범죄 피해 유무와의 관계에서 재산범죄 피해를 한번이라도 경험한 여자 청소년은 429명(11.4%), 남자 청소년은 431명(12.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급과 재산범죄 피해 유무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재산범죄 피해를 경험한 고등학생이 432명(11.8%), 중학생이 428명(12/3%)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 727명(12.1%), 양부모외의 가정환경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133명(11.7%)이 재산범죄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별, 학교급, 가정환경에 따른 재산범죄 피해 경험 유무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또 다른 통제변수인 학교폭력전담경찰 배치 여부와 학교폭력 예방

교육 여부 역시 재산범죄 피해 경험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번 연구의 독립변수인 학교 및 거주지 주변 환경은 종속변수인 재산범죄 피해 경험 유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10.875, p<.001$).

<표 2>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주요변수의 특성

범주		재산피해 유무				
		유		무		
		n	%	n	%	
성별	여자	429	11.4	3333	88.5	$\chi^2=3.617$
	남자	431	12.8	2916	87.2	
학교급	고등학생	432	11.8	3212	88.1	$\chi^2=.413$
	중학생	428	12.3	3037	87.6	
학교폭력 전담경찰 배치 여부	유	506	11.9	3728	88.0	$\chi^2=.211$
	무	354	12.3	2521	87.6	
가정형태	유	790	12.0	5742	87.9	$\chi^2=.001$
	무	70	12.1	507	87.6	
경제수준	기타	133	11.7	1003	88.2	$\chi^2=.193$
	양부모	727	12.1	5246	87.829	
		M=5.66 (SD=2.040) min-max: 1-8		M=5.70 (SD=2.023) min-max: 1-8		t=.681
주거지 및 주변환경	학교	M=30.0756 (SD=8.93425) min-max: 16-64		M=26.7555 (SD=8.31668) min-max: 16-64		t=-10.875***

주: * $p<.05$, ** $p<.01$, *** $p<.001$

2. 주거지 및 학교 주변 환경과 청소년 재산범죄 피해의 관계

이 연구의 최종 분석인 주거지 및 학교 주변환경과 재산범죄 피해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독립변수인 주거지 및 학교주변환경은 재산범죄 피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45, p<.001$).

즉, 이것은 주거지 및 학교 주변 환경이 무질서한 정도가 클수록 청소년 재산범죄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지 및 학교 주변 환경의 무질서가 재산범죄 피해의 원인으로 설명되었다.

추가적으로 이 연구의 통제변수 중 하나인 성별은 여성 청소년일수록 재산범죄 피해를 더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의 가정형태, 경제수준, 학교폭력 전담경찰 배치 여부, 학교폭력 예방교육 여부는 재산범죄 피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청소년의 부모방임 정도와 재산범죄 피해의 관계

변수	종속 = 재산피해					
	s.e	β	t(p)	공차	VIF	
성별	.010	-.027	-2.252**	.982	1.019	
학력	.010	-.020	1.675	.987	1.013	
가정형태	.011	.009	.750	.937	1.067	
통제	경제수준	.003	-.010	-.805	.936	1.068
	학교폭력 전담경찰 배치 여부	.011	-.009	-.694	.902	1.10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여부	.019	.004	.306	.898	1.114
	주거지 및 학교 주변환경	.001	.145	12.309***	.937	1.010
F=23.004***						

주: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이 연구는 주거지 및 학교 주변 환경의 무질서 정도에 따른 재산범죄 피해와의 관계를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재산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주거지 및 학교 주변 환경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그 동안 연구가 부족하였던 재산범죄 피해를 연구하였으며 그 대상은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는 기존의 주거지 및 학교와 같은 지역사회의 무질서가 범죄피해를 예측한다는 결과를 파악한 선행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주거지 및 학교의 무질서가 재산범죄 피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이 재산범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는 점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특히, 박승훈(2010)의 연구에서 북미워싱턴 지역의 지역사회 환경이 폭력범죄보다 재산범죄를 강하게 예측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국내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둘 수 있지만 이 연구의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수인 재산범죄 피해의 경우 한 번이라도 당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만을 측정된 문항을 합쳐서 값이 높을 수록 재산범죄 피해가 큰 것으로 측정되었다. 하지만 재산범죄 피해의 결과가 심각한 만큼 더욱 강한 예측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된 단순 1회성 재산범죄피해 경험보다는 후속 연구에서는 재산범죄 피해 횟수 등을 측정하고 분석에 활용하여 재산범죄 피해 예방의 기초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예측 요인들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의 독립변수인 거주지 및 학교 주변의 무질서의 인식은 주관적인 인식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청소년들마다 개인차가 존재해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다음 연구에서는 관련 기관의 객관적인 측정을 통해 무질서를 측정한다면 보다 정확한 범죄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무질서의 기준이 되는 척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연구 결과에 따라 거주지 및 학교 주변의 무질서가 재산범죄 피해를 정(+)적으로 강하게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 밀집 지역의 무질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오전 오후시간 대에 주로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며 야간 시간에는 학교 근처뿐만 아니라 주거지 근처에서 많은 활동을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학교에 머물러 있는 시간에는 학교전담 경찰관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내 후미진 곳 순찰을 하여 후미진 곳에서 존재할 수 있는 폭력 등 비행에 대처하거나 학교에 후미진 곳이나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장소를 줄이는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는 1차적으로 청소년들이 안정감을 겪어야 하는 장소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벽화나 시설물들을 설치하여 기존 후미지고 위험한 곳이 청소년에게 안락한 장소로 인식되게 하는 등 CPTED 적인 요소를 학교에도 적용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야간에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대한 무질서 해결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현재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력 순찰’ 을 교육하여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들의 주거지 주변 지역에 무질서가 만연하다면 ‘순찰 신문고’ 를 활용하여 해당 순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형사사법기관의 경우 가장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청소년의 시기가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이고 그 시기의 범죄 피해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자주 활동하는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여 무질서를 해소를 통한 범죄 예방활동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고수연·배성만. (2018).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초기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5(9): 203-224.
- 김동현·곽대경. (2021). “청소년의 부모방임 피해가 재산범죄 피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안행정논집」, 18(1): 49-62.
- 김연수. (2016). “깨어진 창 이론을 통한 범질서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08년 대전 중구 유천동 집결지 해체 추진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 김준범·최유일. (2019). “청소년 가출과 다중피해의 관계에서 지역사회 무질서의 가중효과”, 「한국청소년연구」, 30(3): 185-214.
- 김중곤·심희섭. (2018). “부모의 학대, 방임 및 존중의 결여가 아동·청소년의 성폭력피해에 미치는 영향: 가출의 매개효과”, 「한국범죄학」, 12(1): 95-110.
- 남제성·장정현. (2011).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7(3): 101-119.
- 대검찰청. 「2018 범죄분석」.
- _____. 「2019 범죄분석」.
- _____. 「2020 범죄분석」.
- 박승훈. (2010). “강력범죄와 재산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의 물리적 환경 특성에 관한 연구 -북미 워싱턴주의 시애틀 대상으로-”, 「국토계획」, 45(6): 59-72.
- 신소라·조운오. (2015).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의 범죄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장애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11(1): 107-126.
- 이기현. (2016). “깨진 유리창 이론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 28(1): 111-143.
- 이봉행. (2014). “서울거주 외국인 밀집지역내 범죄통제방안에 대한 연구-깨어진 창 이론, 무관용 경찰활동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3(2): 181-208.

- 이상훈·곽대경·심혜인. (2014). “비행적 생활요인이 남녀 청소년의 성범죄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3(1): 115-144.
- 정주섭. (2019).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차별경험이 학교 폭력범죄 피해에 미치는 영향-우울감과 학교적응의 이중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범죄심리연구」, 15(1): 105-128.
- 정진성. (2008). “지역사회특성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한범죄학회지」, 2(2): 3-38.
- _____. (2009).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한 연구: 지역사회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2): 363-394.
- 조윤오·이미정. (2013). “유해업소 출입이 청소년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학회보」, 15(1): 259-286.
- 차훈진·정우일. (2013). “범죄 두려움의 심리와 지역사회 환경”, 「한국범죄심리연구」, 9(2): 169-191.

〈국외문헌〉

- Doerner, W. G., & Lab, S. P. (2011). *Victimology*, 조윤오·김순석·양문승·원혜옥·이동원·이미정·이봉한·이용혁·이재영·최진혁(역). (2011). 「피해자학」. 도서출판 그린.
- Sousa, W. H. & Kelling, G. L., “Of broken windows,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In D. Wiesburd and A. A. Braga(eds), *Police innovation: Contrasting Perspectiv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lson, J. Q & Kelling, G. L. (1982). “Broken Windows”, *Atlantic Monthly*, March 1982.

【Abstract】

Factors Influencing Juvenile Property Crime Damage

Donghyun Kim*
Sora Shin**

Youth crime is a social problem that has been continuously appearing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Although several previous studies have already studied the types of juvenile crimes, there have not been many studies on property crimes among the types of crime victims. Although the scale of property crime damage of juveniles is smaller than that of adults, the adolescent period is an important period, and even minor damage can have serious consequences. Previous studies have found that disorder in schools and residential areas, where adolescents are mainly active, has a positive (+) effect on juvenile crime victims.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focusing on property crime damage among the types of crime victimization among adolesc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causes of juvenile property crime damage and take appropriate measure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disorder in the school and residential environment on juvenile property crime damage by using the 2014 juvenile crime damage survey data of the Korea Institute for Criminal and Justice Policy.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disorder in the environment around the school and residence of the youth has a positive (+) effect on the damage of property crimes of the youth. Therefore, based on the conclusion, a method to strengthen the school CPTED element in the school, use the police patrol activities around the residential area, and a method to prevent property crime damage through related education were suggested.

Key words: youth, crime victimization, property crime, community disorder, broken window theory

* Master's Student, Dongguk University-Seoul Graduate School(first author)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Science, Jeonju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저소득층 아동의 다중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기회이론과 지역 무질서를 중심으로

이혜진* · 조제성**

【요약】

이 연구는 저소득층 아동의 다중범죄피해 실태를 살펴보고, 저소득층 아동이 쉽게 노출되어 있는 특성들인 돌봄 부재와 비구조적 일상활동, 지역 무질서가 다중범죄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석을 위하여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에서 수행한 「저소득층 아동의 범죄피해 실태조사, 2011」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자료에서 저소득층에 속하는 657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응답자 중 24.1%가 2개 유형 이상의 다중범죄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돌봄이 부재하고, 비구조적 일상활동 수준이 높으며, 거주하는 지역의 무질서 수준이 높은 저소득층 아동은 무피해 집단에 비해 다중범죄피해를 경험할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함의와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저소득층 아동, 범죄피해, 다중범죄피해, 기회이론, 지역 무질서

* 동국대학교(서울)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제1저자)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교신저자)

목 차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III. 연구 방법
- IV. 분석 결과
- V. 결 론

I. 서 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저소득층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아울러 지칭하는 표현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을,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잠재적 빈곤층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30만 명 수준이던 기초생활수급자 규모는 2019년 188만 명 수준으로 증가했고,¹⁾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전체 저소득층은 2020년 27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²⁾³⁾

지금까지 저소득층 문제는 주로 경제 및 복지의 측면에서 비중 있게 다뤄져 왔지만, 저소득층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은 저소득층 가정 아동·청소년의 범죄피해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학적 연구의 필요성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저소득층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거주 지역의 열악한 환경, 갈등적 가족관계, 알코올 중독과 같은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며(방소영 외, 2013), 이러한 가정환경은 자녀들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이들을 범죄피해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청소년은 아동학대 및 방임을 경

- 1) e-나라지표(www.index.go.kr)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최종검색 2021년 6월 12일.
- 2) “코로나로 늘어난 취약계층민 삶 살펴야”, 경북매일, 2021년 1월 19일. 최종검색 2021년 6월 12일.
- 3) “63%→ 58%… 3년새 쪼그라든 중산층”, 조선비즈, 2019년 8월 14일. 최종검색 2021년 6월 12일.

협할 가능성이 크며(김광혁, 2006; 김광혁·김예성, 2008; 임현정, 2019), 일반 가정 아동에 비해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따돌림이나 폭력피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폭력피해나 절도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영실·노성훈, 2011).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범죄피해가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취약성을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다중범죄피해를 경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다중범죄피해(poly-victimization)란 개인이 다양한 유형의 범죄 피해를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개념으로, 범죄를 경험한 횟수가 아니라 범죄 유형의 종류, 즉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 범죄 피해를 연구하는 관점이다. 이는 개인의 특정한 환경이 범죄피해 경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Finkelhor 등(2005)에 의해 제시된 범죄 연구의 분석틀이다. 현재 외국에서는 다중범죄피해 개념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를 활용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다중범죄피해 개념을 적용한 기존의 국내 연구들은 주로 일반 아동·청소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저소득층과 같은 특수한 계층이 경험하는 다중범죄피해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저소득층 아동의 범죄피해 실태조사, 2011」 자료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아동이 경험하는 다중범죄피해의 실태를 확인하고, 저소득층 아동이 주로 노출되는 위험요인(돌봄 부재와 비구조적 일상활동, 거주 지역 무질서)이 아동들의 다중범죄피해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다중범죄피해

다중범죄피해(poly-victimization)란 개인이 여러 유형의 범죄피해를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여러 차례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복적 범죄피해(repeated victimization)’와는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다중범죄피해 개념은 2005년 ‘청소년 범죄피해 설문지

(Juvenile Victimization Questionnaire, JVQ)' 를 통해 미국 청소년들의 범죄피해 경험을 조사한 Finkelhor 등(2005)의 연구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Finkelhor et al., 2005). 해당 연구에서 Finkelhor 등은 범죄피해 유형을 34개의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지난 1년간 4개 유형 이상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이들을 다중범죄피해자(poly-victims)로 지칭하였다(Finkelhor et al., 2005). 이후 후속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되었고, 2015년 수행된 연구에서 범죄피해는 ① 폭행 및 괴롭힘(assaults and bullying), ② 성적 피해(sexual victimization), ③ 아동학대(child maltreatment), ④ 재산 피해(property victimization), ⑤ 목격 및 간접피해(witnessed and indirect victimization)의 5가지 범주에 해당되는 44개의 세부 유형으로 측정되었다(Finkelhor et al., 2015)

다중범죄피해에 대한 각국의 연구들은 아동·청소년의 다중범죄피해 경험이 드물지 않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아동·청소년 2,03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체 대상자 중 22%가 4개 유형 이상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7%는 7개 유형 이상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Finkelhor et al., 2005; 2007). 이후 2011년 수행된 연구에서도 응답자 10명 중 1명이 지난 1년간 5개 유형 이상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Finkelhor et al., 2011). 2013년 캐나다의 아동·청소년 2,80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자의 8%가 다중범죄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Cyr et al., 2013), 멕시코 청소년 1,06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범죄피해 설문지(JVQ)를 활용하여 범죄피해 경험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35.9%가 지난 1년간 다중범죄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Méndez-López & Pereda, 2019).

북미권의 연구 뿐 아니라 아시아권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아동·청소년의 다중범죄피해 경험은 확인되고 있다. 2013년 중국 아동·청소년 3,15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전체응답자 중 약 17%가 다중범죄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Dong et al., 2013), 대만의 아동·청소년 5,27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4개 유형 이상의 다중범죄피해를 경험한 응답자가 4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Feng et al., 2014).

국내에서도 2010년대에 들어서부터 다중범죄피해 개념을 활용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중학생의 가정학대 경험과 학교폭력의 중복피해 경험을 분석한 이인선과 최지현(2014)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과 부모의 방관적 양육태도가 다중범죄피해 경험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인선·최지현, 2014), 청소년의 다중범죄피해 경험이 심리적 적응과 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김영미(2015)의 연구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8.3%가 2개 유형 이상의 폭력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연구에서는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이 다중범죄피해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영미, 2015). 청소년 가출과 다중범죄피해 간의 관계에서 지역사회 무질서의 가중효과를 검증한 김준범과 최유일(2019)의 연구에서는 가출 경험과 지역사회 무질서가 다중범죄피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김준범·최유일, 2019), 아동기에 경험한 가정에서의 학대 경험은 청소년기의 다중범죄피해 경험 및 자살시도 위험성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준범, 2019; 최장원·김준범, 2020).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한부모 가정 출신, 연령, 가정에서의 학대 경험, 지역사회의 무질서라는 특성들이 아동·청소년의 다중범죄피해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나타났다(Finkelhor et al., 2005; Finkelhor et al., 2009; 이인선·최지현, 2014; 김영미, 2015; 김준범·최유일, 2019; 최장원·김준범, 2020).

2. 기회이론

기회이론은 범죄 발생에 있어서 환경적 요인과 같은 거시적인 수준의 영향력을 고려한 ‘일상활동이론’과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생활유형이라는 미시적인 수준의 영향력을 고려한 ‘생활양식-노출이론’의 관점을 통합한 이론으로, 1981년 Cohen 등에 의해 제시되었다(Cohen et al., 1981; Madero-Hernandez & Fisher, 2012).

기회이론의 바탕이 된 일상활동이론과 생활양식-노출이론은 범죄자의 개인적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환경적 요소와 개인의 특성이라는, 보다 넓은 차원에서의 영향력을 함께 살펴본 이론들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이론의 핵심적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Cohen과 Felson(1979)의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은 동일한 시공간에 동기화된 범죄자, 적절한 범행 대상, 감시 혹은 보호능력의 부재라는 세 가지 요소들이 결합될 때 범죄가 발생하게 된다고 보며(Cohen & Felson, 1979), Hindelang 등(1978)의 생활양식-노출이론(lifestyle-exposure theory)은 연령이나 직업, 소득 등 개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이로 인해 결정되는 생활양식에 따라 범죄피해에의 노출 정도가 변화할 수 있다고 본다(Hindelang et al., 1978; Madero-Hernandez & Fisher, 2012에서 재인용). 기회이론은 두 이론의 핵심적 개념을 통합한 것으로, 범죄피해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을 ‘노출’ 과 ‘잠재적 범죄자와의 근접성’, ‘잠재적 범행 대상의 매력성’, ‘감시’ 라는 네 요인으로 정리하였다(Cohen et al., 1981; Madero-Hernandez & Fisher, 2012).

선행연구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낮은 시간대에 집 밖에서 하는 일상활동이 범죄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iethe et al., 1987; Kennedy & Forde, 1990),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는 ① 보호자로부터의 적절한 감시를 받을 수 없는 상태, 즉 ‘돌봄이 부재한 상태’에서 보내는 시간이나 ② 특별한 목적 없이 외부의 공공장소에서 보내는 ‘비구조적 일상활동’ 시간이 많을수록 범죄에 노출되어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Goldner et al., 2011; Osgood et al., 1996; Dong et al., 2020; 전영실·노성훈, 2011).

3. 지역 무질서와 범죄피해

지역 무질서란 지역 거주민과 공공기관 수준에서의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관리와 감독 부족으로 인해 조성되는 사회적, 물리적 환경을 말한다(Perkins & Taylor, 2002). 지역 무질서는 크게 사회적 무질서와 물리적 무질서로 구분되는데, 사회적 무질서는 잠재적으로 위협적이거나 불법적인 공공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술에 취한 이들이나 노숙인, 거리에서 떠돌아다니거나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로 인해 조성되는 환경을 의미한다(Skogan, 2012). 물리적 무질서는 버려진 건물이나 부서진 가로등, 쓰레기 더미, 길거리 낙서 등 적절하게 관리되거나 점검되지 않은 가시적인 물리적 환경을 의미한다(Skogan, 2012). 지역 무질서는 여러 형태의 범죄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는 지역 무질서가 지역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범죄를 억제하는 비공식적 사회 통제와 유대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또 다른 형태의 범죄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Skogan, 2012).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역 무질서는 지역사회의 자원 부족과 물리적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 거주민들로 하여금 범죄나 비행, 폭력과 같은 부정적인 사건들을 경험할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Sampson et al., 2002), 해당 지역의

청소년들을 폭력과 범죄피해에 노출시킬 수 있다(Turner et al., 2013). 지역 무질서의 영향력은 다중범죄피해와 관련된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미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역 무질서와 범죄피해 노출 간의 관계를 분석한 Turner 등(2013)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 무질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범죄피해 가능성을 높이며, 높은 수준의 지역 무질서는 청소년의 다중범죄피해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urner et al., 2013).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지역사회 무질서 수준은 가출 경험 여부에 따라 다중범죄피해를 경험할 위험성을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6배 이상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준범·최유일, 2019).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지역 무질서가 아동·청소년의 범죄피해에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 가설들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1. 돌봄이 부재한 저소득층 아동일수록 다중범죄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2. 비구조적 일상활동이 많은 저소득층 아동일수록 다중범죄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3. 거주 지역의 무질서 수준이 높은 저소득층 아동일수록 다중범죄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및 연구 대상

이 연구의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저소득층 아동의 범죄피해 실태조사, 2011」 자료이다. 2015년에 공개된 이 자료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총 1,65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해당 자료에서 빈곤층에 해당되지 않는 아동들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657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2. 측정도구

1)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다중범죄피해로, 이는 Finkelhor 등(2015)의 연구를 참고하여 ① 신체적 폭력, ② 비신체적 폭력, ③ 아동학대, ④ 재산범죄 피해, ⑤ 폭력 간접 목격의 5가지 유형에 대한 피해경험 여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모든 문항들은 지난 1년간의 경험을 묻은 것으로, 각각의 범죄피해를 측정하는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표 1> 범죄피해 유형 및 세부 문항

피해 유형	세부 문항
신체적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제자매로부터 심하게 맞거나 차인 적이 있다 ▪ 또래나 선후배로부터 맞은 적이 있다 ▪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맞은 적이 있다
비신체적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나 선후배로부터 괴롭힘(욕을 하거나 못살게 굴거나 억지로 싫은 일을 시키는 등)을 당한 적이 있다 ▪ 또래나 선후배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 친구나 선후배가 겁준 적이 있다 ▪ 모르는 사람이 겁준 적이 있다
아동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부모, 조부모, 친척 등)으로부터 심하게 맞거나 발로 걷어차인 적이 있다 ▪ 가족으로부터 심한 욕을 들은 적이 있다 ▪ 가족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 ▪ 더러운 옷을 입고 지내거나 젖은 이부자리에서 잠 잔 적이 있다 ▪ 열이 많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다 ▪ 나쁜 짓을 해도 모른 체 한 적이 있다 ▪ 연락 없이 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은 적이 있다
재산범죄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나 선후배가 겁주거나 때려서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적이 있다 ▪ 모르는 사람이 겁주거나 때려서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적이 있다 ▪ 모르는 사람이 내 물건이나 돈을 훔쳐간 적이 있다
폭력 간접 목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이 다들 때 욕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 부모님이 다들 때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 ▪ 친구나 선후배들이 다른 친구를 괴롭히거나 왕따시키는 것을

	본 적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나 선후배들이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 ▪ 친구나 선후배들이 다른 친구에게 겁줘서 물건이나 돈을 뺏는 것을 본 적이 있다 ▪ 모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 ▪ 모르는 사람들이 물건이나 돈을 몰래 훔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 모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겁줘서 물건이나 돈을 뺏는 것을 본 적이 있다
--	---

이상의 5가지 유형에 대해 2개 유형 이상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를 다중범 죄피해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2) 독립변수

돌봄 부재. 돌봄 부재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여러분이 학교 갔다 오면 집에서 주로 누가 돌봐주나요?” 라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에 ‘아무도 없다’ 라고 응답한 경우를 돌봄 부재로, 이 외의 응답은 비혜당(돌봄 있음)으로 재코딩하였다. 돌봄 부재는 0과 1의 값을 지니는 가변수의 형태로 분석에 투입되었으며, 준거집단은 비혜당(돌봄 있음)이다.

비구조적 일상활동. 비구조적 일상활동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2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1) 특별한 목적 없이 오랜 시간 길거리 돌아다니기. 2) 어른 없이 밤늦게까지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이상의 2개 문항은 이러한 행동을 일주일에 평균 몇 번 정도 하는지를 6점 리커트 척도(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상)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구조적 일상활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두 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값은 .62로 나타났다.

지역 무질서. 지역 무질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1) 우리 동네에는 주위에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다. 2) 우리 동네에는 어둡고 구석진 곳이 많다. 3) 우리 동네에는 불량배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가 있다. 4) 우리 동네에는 밤에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닌다. 이상의 4개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 무질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4개 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값은 .71로 나타났다.

3) 통제변수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아동의 범죄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요인들을 통제변수로서 분석 모형에 포함하였다. 이 연구에 포함된 통제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성별. 성별은 0과 1의 값을 지니는 가변수의 형태로 분석에 투입되었으며, 준거집단은 남자이다.

연령. 연령은 본인의 나이를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측정되었으며, 연속형 변수 형태 그대로 분석에 투입되었다.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 중 외국 사람이 있나요?” 라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에 대해 ‘두 분 모두 한국사람’ 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비해당(일반 가정)으로, 그 외의 응답은 다문화 가정으로 재코딩하였다. 단, ‘부모님 안계심’ 이라는 응답은 결측으로 처리하였다. 다문화 가정 여부는 0과 1의 값을 지니는 가변수의 형태로 분석에 투입되었으며, 준거집단은 비해당(일반 가정)이다.

부의 음주. 아버지의 음주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분의 아버지는 술을 어느 정도 마시나요?” 라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전혀 안 마신다 - 거의 매일 마신다)로 측정되었으며, ‘아버지가 안 계신다’ 는 응답은 결측으로 처리하였다. 이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음주 빈도가 잦음을 의미한다.

모의 음주. 어머니의 음주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분의 어머니는 술을 어느 정도 마시나요?” 라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전혀 안 마신다 - 거의 매일 마신다)로 측정되었으며, ‘어머니가 안 계신다’ 는 응답은 결측으로 처리하였다. 이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음주 빈도가 잦음을 의미한다.

부모 감독.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도감독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1) 내가 집밖에 있을 때 부모님은 항상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신다. 2) 내가 집밖에 있을 때 부모님은 항상 내가 누구와 있는지 알고 계신다. 3) 내가 집밖에 있을 때 부모님은 항상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신다. 이상의 3개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지도감독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개 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값은 .83으로 나타났다.

부모 애착. 자녀와 부모와의 애착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1) 나는 부모님과 매우 가깝다고 느낀다. 2) 나는 문제가 생길 때 부모님에게 잘 얘기한다. 3) 부모님은 나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이신다. 이상의 3개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개 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값은 .76으로 나타났다.

교사 애착. 아동과 교사와의 애착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1) 나는 고민이 있을 때 선생님과 상의하는 편이다. 2) 나는 선생님과 매우 가깝다고 느낀다. 3) 선생님은 나를 잘 이해해 주신다. 이상의 3개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과 교사와의 애착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개 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값은 .78로 나타났다.

또래 애착. 또래와의 애착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1) 내가 도움을 구하면 친구들은 나를 돕는다. 2) 나는 문제가 생길 때 친구들에게 잘 얘기한다. 3) 나는 친구들과 매우 가깝다고 느낀다. 이상의 3개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와의 애착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개 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값은 .81로 나타났다.

3. 분석 방법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별과 연령, 다문화 가정 여부와 빈곤 유형 변수에 대해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다중범죄피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5개 유형의 범죄피해 경험에 대한 빈도분석을 수행하였고, 주요 변수들과 다중범죄피해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과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돌봄 부재와 비구조적 일상활동, 지역 무질서가 저소득층 아동의 다중범죄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연구대상자 중 남자는 49.3%, 여자는 50.7%로 나타났고, 연령을 살펴보면 13세가 35.8%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12세(35.3%), 11세(28.9%)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여부를 살펴본 결과 연구대상자의 대다수가 일반가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2.8%).

빈곤 유형을 살펴본 결과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아동은 19.9%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아동은 18.4%로 나타났다. 이 외 61.6%의 아동들은 기타 빈곤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기타 빈곤층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는 속하지 않지만 아동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교사나 주민센터 직원에 의해 빈곤층으로 인정되는 취약계층의 아동을 의미한다(전영실·노성훈, 2011).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유형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324	49.3
	여자	333	50.7
연령	11세	190	28.9
	12세	232	35.3
	13세	235	35.8
다문화 가정	일반 가정	582	92.8
	다문화 가정	45	7.2
빈곤 유형	기초생활수급권자	131	19.9
	차상위계층	121	18.4
	기타 빈곤층	405	61.6

2. 저소득층 아동의 다중범죄피해 실태

저소득층 아동의 다중범죄피해 실태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5개 범죄 유형 각각의 피해경험에 대한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저소득층 아동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은 폭력 간접 목격으로, 전체 응답자의 36.5%에 이르는 아동들이 지난 1년간 타인이 신체적, 비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재산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아동들이 두 번째로 많이 경험한 것은 아동학대로, 전체 응답자의 23.6%가 지난 1년 내에 신체적 폭력이나 언어적 폭력, 방임이나 방관 등의 아동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난 1년 내에 타인으로부터 맞거나 발로 차이는 등의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은 17.8%로 나타났으며, 괴롭힘이나 따돌림, 겁주기 등의 비신체적 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은 13.7%로 나타났다. 타인이 자신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훔쳐가는 등의 재산범죄 피해를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은 8.7%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다중범죄피해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3.4%가 1개 유형 이상의 범죄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29.3%는 단일범죄피해를, 나머지 24.1%는 2개 유형 이상의 다중범죄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유형의 피해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아동

은 전체 응답자의 46.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저소득층 아동의 범죄피해 실태

	유형	빈도(명)	비율(%)
신체적 폭력	경험 없음	525	82.2
	경험 있음	114	17.8
비신체적 폭력	경험 없음	553	86.3
	경험 있음	88	13.7
아동학대	경험 없음	494	76.4
	경험 있음	153	23.6
재산범죄 피해	경험 없음	585	91.3
	경험 있음	56	8.7
폭력 간접 목격	경험 없음	411	62.6
	경험 있음	240	36.5
다중범죄피해	피해경험 없음	287	46.7
	단일범죄피해 경험	180	29.3
	다중범죄피해 경험	148	24.1

3. 주요 변수와 다중범죄피해 간의 관계

1) 돌봄 부재 여부에 따른 다중범죄피해 경험의 차이

돌봄 부재 여부에 따라 다중범죄피해 경험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돌봄 부재 여부와 범죄피해 경험 간 교차분석

		무피해	단일범죄피해	다중범죄피해	χ^2
돌봄 부재	비해당	201(47.9%)	126(30.0%)	93(22.1%)	2.50
	해당	83(43.9%)	53(28.0%)	53(28.0%)	

분석 결과, 돌봄 부재 여부에 따라 범죄피해 경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돌봄이 있었던 아동에 비해 돌봄이 없었던 아동이 다중범죄피해를 경험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비구조적 일상활동과 지역 무질서에 따른 다중범죄피해 경험의 차이

비구조적 일상활동과 지역 무질서 수준에 따라 범죄피해 경험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비구조적 일상활동과 지역 무질서, 범죄피해 경험에 대한 분산분석

		무피해	단일범죄 피해	다중범죄 피해	F	사후 검정
비구조적 일상활동	N	276	175	142	4.52*	a < c
	M(S.E)	0.55(0.94)	0.66(1.13)	0.90(1.24)		
지역 무질서	N	281	177	146	12.05**	a < c b < c
	M(S.E)	2.32(0.80)	2.50(0.88)	2.74(0.84)		

주: 1) * $p < .05$, ** $p < .01$

2) a: 무피해, b: 단일범죄피해, c: 다중범죄피해

분석 결과, 비구조적 일상활동 수준에 따라 범죄피해 경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후검정을 수행한 결과 무피해 집단과 다중범죄피해 집단 간에 비구조적 일상활동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지역 무질서의 경우에도 범죄피해 경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후검정을 수행한 결과 무피해 집단과 다중범죄피해 집단 간에($p < .001$), 단일범죄피해 집단과 다중범죄피해 집단 간에 지역 무질서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4. 저소득층 아동의 다중범죄피해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다중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

에서 돌봄 부재와 비구조적 일상활동, 지역 무질서가 저소득층 아동의 다중범죄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무피해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돌봄 부재, 비구조적 일상활동, 지역 무질서가 다중범죄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B	Odds ratio	95% C.I. (O.R.)	
성별	.51	1.67	(0.89, 3.15)	
연령	.09	1.10	(0.75, 1.60)	
다문화 가정	-.25	0.78	(0.23, 2.61)	
통제 변수	부의 음주	-.07	0.93	(0.68, 1.27)
	모의 음주	-.03	0.97	(0.60, 1.57)
	부모 감독	-.11	0.90	(0.63, 1.30)
	부모 애착	-.42*	0.65	(0.43, 0.99)
	교사 애착	-.45*	0.64	(0.43, 0.96)
	또래 애착	.02	1.02	(0.71, 1.46)
독립 변수	돌봄 부재	.63†	1.88	(0.98, 3.60)
	비구조적 일상활동	.26†	1.29	(0.97, 1.72)
	지역 무질서	.52**	1.68	(1.14, 2.46)

$N = 241$, Cox & Snell $R^2 = .18$, Nagelkerke $R^2 = .25$
 $-2LL = 260.54$, $\chi^2 = 47.18(df=12)^{***}$

주: 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2) 가변수의 준거집단: 성별(남자), 다문화 가정(비해당), 돌봄 부재(비해당)

분석 모형의 -2로그우도값은 260.54로, 해당 모형의 적합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47.18$, $df=12$, $p<.001$).

무피해 집단과 다중범죄피해 집단을 비교한 결과, 통제변수로 투입된 변수 중 부모애착($B=-.42$, $p=.047$)과 교사애착($B=-.45$, $p=.029$)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애착수준이 높은 저소득층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다중범죄피해를 경험하지 않을 확률이 1.54(1/0.6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와의 애착수준이 높은 저소득층 아동은 그렇지 않

은 아동에 비해 다중범죄피해를 경험하지 않을 확률이 1.56(1/0.6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독립변수로 분석에 포함된 돌봄 부재($B=.63, p=.058$), 비구조적 일상활동($B=.26, p=.079$), 지역 무질서($B=.52, p=.008$) 세 변수 모두가 다중범죄 피해 경험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이 부재한 저소득층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다중범죄피해를 경험할 확률이 1.88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구조적 일상활동의 수준이 높은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다중범죄피해를 경험할 확률이 1.2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교 후 자신을 돌봐주는 보호자(부모, 친척, 형제자매 등)가 아무도 없거나, 특별한 목적 없이 늦은 시간까지 거리를 돌아다니는 날이 많은 저소득층 아동일수록 다중범죄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역 무질서 수준이 높은 저소득층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다중피해를 경험할 확률은 1.6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저소득층 아동이 거주하는 동네에 어둡고 구석진 곳이 많고, 불량배가 자주 모이는 장소가 있거나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닐수록 아동이 다중범죄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V. 결 론

이 연구는 다중범죄피해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국내 저소득층 아동의 다중범죄피해 실태를 살펴보고, 저소득층 아동이 주로 노출되는 위험요인인 돌봄 부재와 비구조적 일상활동, 거주 지역 무질서가 아동들의 다중범죄피해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저소득층 아동의 범죄피해 실태 조사, 2011」 자료를 활용해 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4.1%가 지난 1년간 2개 유형 이상의 다중범죄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돌봄 부재와 비구조적 일상활동, 지역 무질서라는 세 가지 요인 모두가 저소득층 아동의 다중범죄피해 경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저소득층 아동이 하교 후 부모나 친척, 형제자매 등 자신을 돌봐줄 수 있는 보호자가 부재할수록, 특별한 목적 없이 늦은 시간까지 거리를 돌아다니는 날이 많을수록,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에 불량배나 주취자 등이 모이는 장소가 있거나 감독이나 감시가 없는 어둡고 구석진 곳이 많을수록 다양한 유형의 범죄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내 저소득층 아동이 상당한 수준의 다중범죄피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다중범죄피해에 저소득층 아동의 거주 지역 특성이나 일상활동 특성이 분명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소득층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갈등적 가족관계, 열악한 거주환경 등 다양한 차원에서 많은 취약성을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해 해당 가정의 자녀들은 보호자로부터의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학원 등의 방과 후 활동의 기회를 얻지 못해 거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높은 무질서 수준은 이러한 요인과 함께 저소득층 아동들을 많은 범죄에 노출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아동의 다중범죄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하교 이후 보호자로부터의 돌봄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추가적인 돌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늦은 시간까지 목적 없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등의 비구조적 일상활동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 순찰의 증대나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 등의 방법을 통하여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수준을 감소시킴으로써 범죄기회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연구대상 중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하지는 않지만 빈곤층에 포함되는 취약계층이 60%이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앞서 제시된 방안들을 수행하기에 앞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사각지대에 처한 저소득층 아동들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가능케 하는 정책적 차원에서의 보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다중범죄피해 실태와 영향요인을 분석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이 연구는 저소득층 아동이 경험하는 돌봄 부재와 비구조적 일상활동, 지역 무질서라는 특성이 다중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해당 특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거쳐, 혹은 어떤 외부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다중범죄피해로 이어지는지를 분석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분석에 활용된 원자료의 연구 대상이 저소득층 아동에 한정되어 있어, 발달 수준과 생활양식에 있어 아동과 많은 차이를 보이는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해서는 다중범죄피해 실태와 해당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볼 수 없었

64 형사사법연구 제4권 제2호

다. 후속연구에서는 이상의 한계점을 보완한 연구가 이루어져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다중범죄피해 실태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면적인 분석이 가능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지현. (2018). “개인범죄 반복피해의 영향요인과 피해후유증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0(1): 3-32.
- 김광혁. (2006). “가족배경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 빈곤과 가족 소득, 가족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45: 53-74.
- 김광혁·김예성. (2008). “가족빈곤이 아동학대 및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부모의 우울 및 가족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7(5): 847-859.
- 김보아·정혜주. (2021). “중복피해 관점에서의 청소년기 폭력피해 경험과 성 피해 경험과의 연관성”, 「보건과 사회과학」, 56: 51-85.
- 김영미. (2016).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과 심리적 적응 및 비행문제”, 「한국콘텐츠학회」, 16(1): 470-481.
- 김준범. (2019). “초기청소년기 가정 내 학대피해와 가정 외 폭력피해 및 자살시도: 다중폭력피해 관점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30(2): 213-239.
- 김준범·최유일. (2019). “청소년 가출과 다중피해의 관계에서 지역사회 무질서의 가중효과”, 「한국청소년연구」, 30(3), 185-214.
- 김준범·최윤희. (2018). “초기 청소년기 다중폭력피해자의 자살시도에 관한 연구: 심리적 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26(1): 121-149.
- 노성호. (2010). “다중범죄피해의 실태와 영향요인”. 「형사정책연구」, 21(3): 77-102.
- 박성훈. (2011). “범죄기회요인과 지역특성이 가구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22(3): 327-357.
- 방소영·최선희·이수현·황혜정. (2013). “저소득 가정 부모의 심리적·행동적 특성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양부모 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비교”,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5): 157-179.
- 윤우석. (2018). “일탈적 생활양식과 범죄행동이 범죄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7(2): 153-192.

- 이인선·최지현. (2014). “청소년의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학교폭력의 중복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5(3), 259-281.
- 임현정. (2019). “메타분석을 활용한 빈곤이 아동학대 및 방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10(5): 1163-1176.
- 장안식. (2014). “단발성 범죄피해와 중복적 범죄피해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22(2): 201-224.
- 전영실. (2011). 저소득층 아동의 범죄피해 실태조사, 2011.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서비스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자료공개년도: 2015년. 자료번호: A1-2011-0156.
- 전영실·노성훈. (2011). “저소득층 아동의 범죄피해실태 및 보호방안”,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중엽·정혜민·노성훈. (2019). “아동·청소년의 단발성 폭력피해와 반복적 폭력피해의 영향요인: 기회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3(2): 57-72.
- 최장원·김준범. (2020). “아동학대 경험이 청소년기 다중피해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범죄심리연구」, 16(2): 171-187.

〈국외문헌〉

- Cohen, L. E., & Felson, M.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8-608.
- Cohen, L. E., Kluegel, J. R., & Land, K. C. (1981). “Social inequality and predatory criminal victimization: An exposition and test of a formal theor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05-524.
- Cuevas, C. A., Finkelhor, D., Turner, H. A., & Ormrod, R. K. (2007). “Juvenile delinquency and victimization: A theoretical typolog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2(12): 1581-1602.
- Cyr, K., Chamberland, C., Clément, M. È., Lessard, G., Wemmers, J. A., Collin-Vézina, D., & Damant, D. (2013). “Polyvictimization and victimization of children and youth: Results from a populational survey”. *Child Abuse & Neglect*, 37(10): 814-820.
- Dong, B., Morrison, C. N., Branas, C. C., Richmond, T. S., & Wiebe, D. J. (2020). “As violence unfolds: A space-time study of situational

- triggers of violent victimization among urban youth” .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36(1): 119-152.
- Dong, F., Cao, F., Cheng, P., Cui, N., & Li, Y. (2013). “Prevalence and associated factors of poly-victimization in Chinese adolescents” .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54(5): 415-422.
- Ellonen, N. & Salmi, V. (2011). “Poly-victimization as a life condition: Correlates of poly-victimization among Finnish children” . *Journal of Scandinavian Studies in Criminology and Crime Prevention*, 12: 20-44.
- Feng, J. Y., Chang, Y. T., Chang, H. Y., Fetzer, S., & Wang, J. D. (2015). “Prevalence of different forms of child maltreatment among Taiwanese adolescents: A population-based study” . *Child Abuse & Neglect*, 42: 10-19.
- Finkelhor, D., Hamby, S. L., Ormrod, R., & Turner, H. (2005). “The Juvenile Victimization Questionnaire: reliability, validity, and national norms” . *Child abuse & neglect*, 29(4): 383-412.
- Finkelhor, D., Ormrod, R. K., & Turner, H. A. (2007). “Poly-victimization: A neglected component in child victimization” . *Child abuse & neglect*, 31(1): 7-26.
- Finkelhor, D., Ormrod, R. K., Turner, H. A., & Hamby, S. L. (2005). “Measuring poly-victimization using the Juvenile Victimization Questionnaire” . *Child abuse & neglect*, 29(11): 1297-1312.
- Finkelhor, D., Ormrod, R., Turner, H., & Holt, M. (2009). “Pathways to poly-victimization” . *Child maltreatment*, 14(4): 316-329.
- Finkelhor, D., Turner, H., Hamby, S. L., & Ormrod, R. (2011). “Polyvictimization: Children’s Exposure to Multiple Types of Violence, Crime, and Abuse” . National survey of children’s exposure to violence.
- Goldner, J., Peters, T. L., Richards, M. H., & Pearce, S. (2011). “Exposure to community violence and protective and risky contexts among low income urban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A prospective study” .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2): 174-186.

- Hindelang, M. J., Gottfredson, M. R., & Garofalo, J. (1978). *Victims of personal crime: An empirical foundation for a theory of personal victimization*. Cambridge, MA: Ballinger.
- Letourneau, N. L., Duffett-Leger, L., Levac, L., Watson, B., & Young-Morris, C. (2013).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 development: A meta-analysis".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21(3): 211-224.
- Madero-Hernandez, A., & Fisher, B. S. (2012). Routine activity theory. In Cullen, F. T., & Wilcox, P. (Eds.). (2012). *The Oxford handbook of criminological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513-534.
- Méndez-López, C., & Pereda, N. (2019). "Victimization and poly-victimization in a community sample of Mexican adolescents". *Child abuse & neglect*, 96: 1-11.
- Miethe, T. D., & Meier, R. F. (1990). "Opportunity, choice, and criminal victimization: A test of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7(3): 243-266.
- Miethe, T. D., Stafford, M. C., & Long, J. S. (1987). "Social differentiation in criminal victimization: A test of routine activities/lifestyle theo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84-194.
- Osgood D. W., Wilson J. K., O' Malley P. M., Bachman J. G., Johnston L. D. (1996). "Routine activities and individual deviant behavio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4): 635-655.
- Perkins, D. D., & Taylor, R. B. (2002). Ecological assessments of community disorder: Their relationship to fear of crime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In *Ecological research to promote social change* (pp. 127-170). Springer, MA: Boston.
- Safe Start,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 United States of America. (2011). "Children Exposed to Violence: Tips for Staff and Advocates Working With Children: Polyvictimization". 1-4.
- Sampson, R. J., Morenoff, J. D., & Gannon-Rowley, T. (2002). "Assessing "neighborhood effects": Social processes and new directions in research ". *Annual review of sociology*, 28(1): 443-478.

- Skogan, W. G. (2012). Disorder and crime. In Welsh, B. C., & Farrington, D. P. (Eds.). (2012). *The Oxford handbook of crime prevention*. 173-188.
- Turner, H. A., Shattuck, A., Hamby, S., & Finkelhor, D. (2013). "Community disorder, victimization exposure, and mental health in a national sample of youth" .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54(2): 258-275.

【Abstract】

Poly-victimization of Children in Low-income Families

Hyejin Lee*

Jeseong Jo**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actual condition of poly-victimization in children of low-income families; and investigate the effect of factors to which low-income children are typically exposed: a lack of care, unstructured daily activities, and community disorder. Using 「Survey on Crime Victimization of Children in Low-income Families, 2011」 of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 sample of 657 low-income children ages 11 to 13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24.1% of the participants had experienced more than two types of victimization in the past year. Second, low-income children with a lack of care, a high level of unstructured daily activities, and a high level of disorder in their area of residence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poly-victimization than the non-victimized group.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low-income children, poly-victimization, opportunity theory, community disorder

* Doctoral Student, Dongguk University-Seoul Graduate School(first author)

** Research Fellow,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corresponding author)

청소년의 성별과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여부가 휴일 인터넷 사용시간에 미치는 영향

김 소 영* · 김 지 호** · 심 헤 인***

【요 약】

현대사회의 기술 발전과 함께 인터넷은 현대인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이용실태조사」를 살펴보면 만 3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주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은 17.4시간이다. 문명의 이기인 인터넷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있음은 자명하나, 장시간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존재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인터넷 중독의 부정적 영향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게다가 청소년은 주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에 있어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치인 19.8시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장시간 인터넷 사용이 가져오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정작 장시간 인터넷 사용을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성별과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따라 휴일 인터넷 사용시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 제주도를 제외한 초, 중, 고등학생 약 5,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휴일 인터넷 사용시간에 대해 성별과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여부 각각에 따른 독립적인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후 성별과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이 휴일 인터넷 사용시간에 미치는 상호작용 역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사후분석 결과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없는 수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휴일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동국대학교(서울)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석사과정(제1저자)

** 동국대학교(서울)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석사과정(공동저자)

***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교신저자), crimesim@ysu.ac.kr

주제어: 청소년, 인터넷, 사이버폭력, 인터넷 사용시간, 폭력, 중독성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 방법
IV. 분석 결과
V. 결 론

I. 서 론

스마트폰이 빠르게 보급화 되면서 대중의 인터넷 활용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 1,984만 가구 중 1,980만 가구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되었다. 3세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을 살펴보면 3~9세의 경우 2016년 82.9%에서 2020년 91.2%로 증가하였고, 10대의 경우 2016년과 2020년 모두 100%, 20대의 경우 10대와 마찬가지로 2016년, 2020년 모두 99.9%로 나타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과거 2000년 우리나라 인터넷 접속 가능 가구의 비율이 49.8%였던 점을 고려하면, 인터넷의 보급이 매우 급속도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일상 속 인터넷 개입 비중의 증가는 현실공간과 마찬가지로 사이버공간에서도 사회화를 경험하게 되었다(송승연, 이창배, 2020).

인터넷이나 전자매체 등을 활용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비대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사회활동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게 되어 일부 사람들에게는 전통적인 대면 의사소통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성인보다 어려서부터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를 접한 청소년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강지현, 202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터넷은 그 사용

기간에 비해 급속도로 양적 팽창을 이루고 있는데, 빠른 속도의 정보공유, 시공간 제약이 없는 의사소통 등 인터넷을 통한 순기능 이외에 인터넷 사용의 질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측면과 중독과 같은 무절제한 이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이승대, 김선미, 2008).

이를 바탕으로 장기간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이용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특히, 다수의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는 중독에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있어 장기간 인터넷 사용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영향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부정적 결과의 원인이 되는 인터넷 사용시간이 개인이 속한 집단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어떤 집단이 인터넷을 더 오래 사용하는지 등의 특성에 관해서는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인터넷 이용률과 삶에 있어서 인터넷을 통한 활동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과연 어떤 집단이 인터넷 사용시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과 성별을 중심으로 집단간 차이를 주요하게 다루어 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폭력은 알코올, 약물, 도박, 게임 등과 같이 중독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유무에 따라 인터넷 사용시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청소년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 유형에 있어서 남학생이 물리적·육체적 폭력을 주로 사용하는 반면, 여학생은 관계적·간접적 폭력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별 역시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시간에 있어서 적절한 집단 분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즉, 성별에 따라 사용 유형과 사용시간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실증자료를 통계적으로 활용하여 성별과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경험에 따라 인터넷 사용시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에게 있어 여러 부정적 결과들을 불러올 수 있는 장기간 인터넷 사용시간을 보이는 집단을 선별하고, 장기적으로 집단별 특성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인터넷 사용시간

1) 청소년과 인터넷 사용

인터넷은 전 세계의 컴퓨터를 연결한 통신망으로 인터넷을 통해 이메일, 검색, 정보 열람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20세기 후반 일명 정보화 시대가 도래한 이후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다양한 사건들로 인터넷의 활용 범위, 중요성, 그로 인한 인터넷 사용자 수와 사용시간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21세기에 태어난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은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인터넷은 다양한 부정적 측면 또한 함께 가지고 있다. 그 중 인터넷 중독은 사이버 공간 내뿐만 아니라 중독자의 현실 세계 생활에까지 그 영향을 미쳐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다. 사이버 공간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몰입하도록 하는 접근성(accessibility), 통제성(control), 흥미성(excitement)의 세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Young, 1999). 즉, 누구나 인터넷에 접근하기 쉽고, 사이버 상황을 통제할 수 있으며, 이들이 흥미로운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터넷에 더 몰입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은 중독에 취약하며, 중독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역시 크다.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 사용시간은 청소년이 속한 다양한 집단,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김윤영·문진영·이창문, 2018).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을 인터넷 사용에 할애하여 부모와 마찰을 겪거나, 밤늦은 시간까지 인터넷을 하느라 수면시간이 모자라 학업에 열중하지 못하는 등이 그 예이다.

2) 인터넷 사용시간 실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4천 6백만 명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매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인터넷 이용 현황과 행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19년 만 3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주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은 17.4시간이다. 청소년의 경우 주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은 19.8 시간으로 전체 평균보다 약 2.4시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주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시간 연령대	시간							
	1시간 미만	1시간~3시간	3시간~7시간	7시간~14시간	14시간~21시간	21시간~35시간	35시간 이상	1주 평균 (시간)
전체 (%)	3.5	6.0	8.6	22.8	21.2	26.8	11.2	17.4
청소년 (%)	0.9	2.5	4.7	19.5	25.1	35.1	12.2	19.8

출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만 3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남성의 주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은 18.3시간, 여성은 16.5시간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주에 약 1.8시간 정도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남성의 주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은 20.2시간, 여성은 19.3시간으로 남성 청소년이 여성 청소년보다 1주에 약 0.9시간 더 오래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성별 인터넷 사용시간 격차의 1/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표 2> 청소년 성별 주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시간 성별	시간							
	1시간 미만	1시간~3시간	3시간~7시간	7시간~14시간	14시간~21시간	21시간~35시간	35시간 이상	1주 평균 (시간)
남성 (%)	0.9	2.4	4.5	18.5	24.7	36.0	13.0	20.2
여성 (%)	0.9	2.6	5.1	20.6	25.4	34.1	11.3	19.3

출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청소년의 주중과 주말 인터넷 사용시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주말이 주중에 비해 약 2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주중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은 각각 1.67시간, 0.71시간인데 반해 주말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은 각각 2.77시간, 2.42시간으로 나타났다(김윤영 등, 2018). 이는 주로 주중에 학교나 학원 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놓이게 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요약하자면, 청소년은 전체 연령대보다 조금 더 긴 인터넷을 사용시간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 내에서는 여성 청소년보다 남성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중보다 주말에 더 많은 시간을 인터넷 이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선행연구 검토

1) 인터넷 사용시간 영향요인

비록 청소년의 성별과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휴일 인터넷 사용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는 부재하나, 몇몇 소수의 연구들에서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시간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 요인들이 검토되었다.

김선숙·임세희(2018)는 지역사회와 가구의 특성이 아동의 인터넷 사용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가구의 소득이 적을수록, 맞벌이 가구일수록,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절대빈곤율이 낮을수록, 지역이 경제적으로 불평등할수록 인터넷 사용시간이 더 길었다.

한승주(2020)는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건강위험행위가 인터넷 사용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학년, 학교형태, 학업 성적, 부모국적, 거주형태, 경제상태에 따라서 인터넷 사용시간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정신건강 특성 중에는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인지, 우울감,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 시도 유무에 따라서 인터넷 사용시간 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건강위험행위 특성 중에서 흡연 경험, 음주 경험, 약물사용 경험, 위험성 행동 여부에 따라서 인터넷 사용시간의 차이가 있었다. 주관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경우, 자살생각을 할 경우, 흡연, 음주 경험이 있는 경우, 약물을 사용하거나, 위험성 행동을 하는 경우에 인터넷 사용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영 등(2018)은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시간에 대한 전반적인 요인 분석을 실시했으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은 고려하지는 않았다. 정서가 불안정하거나, 낮은 가구소득 또는 어머니 교육수준이 낮은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들과 많이 어울릴수록 주말 인터넷 사용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이버폭력의 중독성

매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를 작성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사이버폭력이란 사이버(인터넷, 휴대전화 등) 공간에서 언어, 영상 등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 혹은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해당 조사에서는 또한 사이버폭력을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유출, 따돌림, 갈취, 강요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형들은 사이버 환경이 아닌 곳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대면 범죄로 다만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을 가짐으로써 사이버폭력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독이란 인체에 흡수되는 물질 중독을 일컫는 경우가 많으나, 도박이나 게임 등 비물질 즉, 행위에 있어서도 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다른 중독 요인들과 마찬가지로 폭력도 일종의 중독성을 가질 수 있다. 홍성열(2002)에 따르면 폭력적 행위는 보상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여기서 보상이란 다른 사람을 폭행한 후에 얻는 성취감이다. 즉, 폭력범죄는 이전의 폭력적 행태가 반복적으로 강화되며 개인이 폭력성에 중독됨으로써 일어나는 것일 수 있다(김우준, 2021).

결과적으로 비물질(행위) 중독은 물질 중독과 마찬가지로 신경계의 학습과 보상 기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폭력 유형에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수성을 가지는 사이버폭력에 있어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도박 등 특정 범죄에 있어서는 일반 범죄에 비해 사이버 범죄의 중독성과 피해규모가 더욱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창균·이은주, 2010).

따라서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 간 휴일 인터넷 사용시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하겠다.

3) 성별에 따른 인터넷 사용

앞서 성별 인터넷 사용시간 실태를 살펴보았을 때, 남성의 인터넷 사용시간이 여성보다 1주에 약 1.8시간, 청소년의 경우 약 0.9시간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은 인터넷 사용 유형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남성은 주로 게임, 오락 등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여성은 교류, 정보추구 등을 목적으로 한다(전신현, 2012, 재인용). 청소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남성 청소년들은 주로 여가활용, 기술향상 등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반면, 여성 청소년들은 소통, 학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민희·전해옥, 2013, 재인용).

남성과 여성은 범죄 유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9년 성별 전체 범죄 대비 특정범죄 비율을 살펴봤을 때 남성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 유형은 교통범죄(25.25%)이며, 여성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 유형은 지능범죄(21.38%)이다. 강력범죄에 있어서는 범죄를 저지른 남성의 2.22%가 강력범죄자이지만, 여성은 그보다 현저히 낮은 0.39%이며, 폭력범죄의 경우 남성의 22.86%, 여성의 18.18%가 그에 해당한다.

성별과 범죄유형의 차이는 청소년의 학교폭력 유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학교폭력을 신체적 폭력과 관계적 폭력 두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남성 청소년이 신체적 폭력을 더 많이 하고, 여성 청소년이 관계적 폭력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운오, 2013)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휴일 인터넷 사용시간이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성별과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가설

가설 1. 휴일 인터넷 사용시간은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있을 때, 피해 경험이 없을 때보다 휴일 인터넷 사용시간이 더 많을 것이다.

가설 2. 휴일 인터넷 사용시간은 성별과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남성은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여부에 따른 휴일 인터넷 사용시간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2-2. 여성은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여부에 따라 휴일 인터넷 사용시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대상 및 분석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청소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이승현·강지현·이원상, 2015). 이 연구에서 활용된 2차 자료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실태를 조사한 자료였다. 예컨대, 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 피해·피해 및 목격 경험, 평일 및 휴일 인터넷 사용시간, 오프라인 폭력 피해 경험 등 사이버폭력에 대한 전반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이었다. 초등학생은 5학년 ~ 6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학생은 전 학년,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1학년 ~ 2학년으로 국한하였다. 따라서 총 7개 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실태를 조사했으며 약 5,700명의 응답을 획득하였다. 조사는 설문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설문이 진행될 학교를 선정할 뒤, 해당 학교에 공문 및 개별연락을 취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후 해당 학교에 연구 진행의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와 조사지침서를 배부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됐다. 해당 조사는 2015년 7월 7일부터 8월 13일까지 이루어졌다.

성별과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여부가 휴일 인터넷 사용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무응답과 같은 불성실한 응답은 제외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온라인에서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여부가 있는 자료만을

표본으로 추출하였으며 총 571명의 표본이 선정되었다.

2) 변수의 측정

이 연구의 독립변인은 성별과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여부이다. 성별의 경우 ‘청소년 사이버 안전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 인구통계학적 목표로 수집하기 위해 측정된 것이다. 또한,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의 경우 응답자들이 사이버폭력을 가해한 경험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통해 ‘예’ 혹은 ‘아니오’로써 가해 경험 여부를 측정된 값을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종속변인은 휴일 인터넷 사용시간이다. 이는 평일을 제외한 휴일(주말, 공휴일 등)에 인터넷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활용된 2차 자료에서는 연구 대상자들에게 등교하지 않는 날(휴일) 인터넷을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했다. 조사에서는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하루에 인터넷을 얼마나 사용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① ‘1시간 이내’, ② ‘2시간 정도’, ③ ‘3시간 정도’, ④ ‘4시간 정도’, ⑤ ‘5시간 이상’으로 측정된 변수를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이용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3)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 활용된 2차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성별과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여부가 인터넷 사용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통계프로그램 SPSS 21.0을 활용하였다.

IV.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1) 인구통계학적 특징

이 연구에 활용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성별, 학년, 지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성별의 경우, 571명 중 남성이 494명으로 전체 표본의 86.5%를 차지했으며 여성은 77명으로 표본의 13.5%의 비율을 차지했다. 응답자의 학년의 경우, 고등학교 2학년이 571명 중 131명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22.9%)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중학교 3학년(83명, 14.5%), 고등학교 1학년(80명, 14%), 초등학교 6학년(75명, 13.1%), 중학교 1학년(75명, 13.1%), 중학교 2학년(70명, 12.3%), 초등학교 5학년(57명, 10%) 순이었다. 응답자 지역의 경우, 경기도가 전체 표본 571명 중 8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4.4%의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남(64명, 11.2%), 서울(62명, 10.9%), 전남(59명, 10.3%), 광주(50명, 8.8%), 인천(42명, 7.4%), 전북(40명, 7%), 대전(37명, 6.5%), 경북(37명, 6.5%), 부산(21명, 3.7%), 충남(19명, 3.3%), 강원(18명, 3.2%), 대구(15명, 2.6%), 충북(14명, 2.5%), 울산(11명, 1.9%)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표 3>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구분	빈도	백분율(%)	사례수
성별	남성	494	86.5	571
	여성	77	13.5	
학년	초등학교 5학년	57	10.0	571
	초등학교 6학년	75	13.1	
	중학교 1학년	75	13.1	
	중학교 2학년	70	12.3	
	중학교 3학년	83	14.5	
	고등학교 1학년	80	14.0	
	고등학교 2학년	131	22.9	
지역	서울	62	10.9	571
	경기	82	14.4	
	인천	42	7.4	

부산	21	3.7
대구	15	2.6
대전	37	6.5
광주	50	8.8
울산	11	1.9
강원	18	3.2
충북	14	2.5
충남	19	3.3
전북	40	7.0
전남	59	10.3
경북	37	6.5
경남	64	11.2

2) 주요 변수들의 통계적 특성

가. 휴일 인터넷 사용시간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휴일 인터넷 사용시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표 4). 분석결과, 휴일 인터넷 사용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가 전체 표본 571명 중 14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5.9%의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3시간 정도(144명, 25.2%), 2시간 정도(123, 21.5%), 4시간 정도(95명, 16.6%), 1시간 이내(61명, 10.7%)의 순으로 구성되었다.

<표 4> 휴일 인터넷 사용시간에 대한 기술통계표

구분	빈도(명)	백분율(%)
1시간 이내	61	10.7
2시간 정도	123	21.5
3시간 정도	144	25.2
4시간 정도	95	16.6
5시간 이상	148	25.9
합계	571	100

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이 연구의 독립변수인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표 5>.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은 110명으로 19.3%의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반해,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인원은 461명으로 80.7%이었다.

<표 5>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기술통계표

구분	빈도(명)		백분율(%)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110	461	19.3	80.7
합계	571		100	

2. 추론통계

이 연구에서는 휴일 인터넷 사용시간이 성별 및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 검증하고자 했다. 이에 앞서, 이 연구에서 활용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본 분석

을 위해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21.0으로 수행되었다.

1) 성별과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여부에 대한 기술통계

성별과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여부에 따른 휴일 인터넷 사용시간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표 6>. 여성들이 보고한 휴일 인터넷 사용시간(M=3.55, SD=1.42)이 남성들이 보고한 휴일 인터넷 사용시간(M=3.21, SD=1.32)보다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집단(M=3.30, SD=1.33)이 가해 경험이 없는 집단(M=3.25, SD=1.34)보다 휴일 인터넷 사용시간이 더 많음을 나타냈다.

<표 6> 성별과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여부에 따른 휴일 인터넷 사용시간의 평균 및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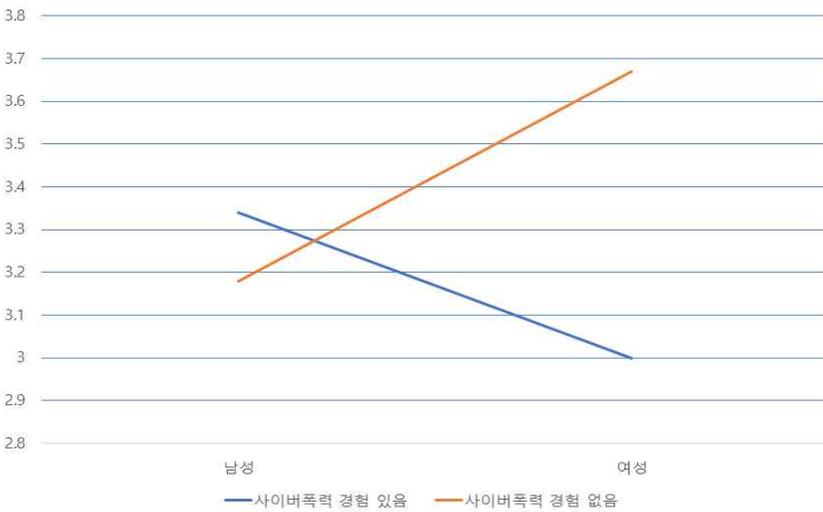
구분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전체 평균	
	있음	없음		
성별	남성	3.34(1.30)	3.18(1.32)	3.21(1.32)
	여성	3.00(1.52)	3.67(1.38)	3.55(1.42)
전체 평균		3.30(1.33)	3.25(1.34)	3.26(1.34)

2) 성별과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여부에 대한 이원변량분석결과

성별과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휴일 인터넷 사용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성별(남, 여) x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있음, 없음)]. 분석결과, 성별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1, 567) = .118, p = .731$). 또한,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대한 주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았다($F(1, 567) = 1.419, p = .234$). 마지막으로, 성별과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대한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1, 567) = 3.908, p < .05$) <표 7>.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므로 어느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Bonferroni 검정을 활용하여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8>. 단순 주효과 분석결과,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없는 수

준에서 성별에 따른 휴일 인터넷 사용시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1, 567) = 7.338, p < .01$). 사후검증 결과, 여성($M=3.67, SD=1.38$)이 남성($M=3.18, SD=1.32$)보다 휴일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은 경향을 나타냈다 ($p < .01$).

<그림 1> 성별과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여부에 따른 휴일 인터넷 사용시간의 상호작용 그래프



<표 7> 성별과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여부에 따른 휴일 인터넷 사용시간의 분산분석 결과

	SS	df	MS	F	p
성별	0.208	1	0.208	0.118	.731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여부	2.507	1	2.507	1.419	.234
성별*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여부	6.907	1	6.907	3.908*	.490

주: * $p < .05$

<표 8> 휴일 인터넷 사용시간에 대한 성별과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여부의 단순 주효과 결과

		평균차	p	95% CI	
				LL	UL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여부 (없음)	성별 (여성)-(남성)	.488	.007	.056	.921

주: CI=confidence interval(신뢰구간); LL=lower limit(하한계); UL=upper limit(상한계)

V. 결론

이 연구는 현대사회에 인터넷 보급률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성별과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여부가 인터넷 사용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 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데이터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청소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2차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과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여부의 독립적인 주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하나의 독립변인만 고려했을 때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성별과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대한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수준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없는 수준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휴일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몇 가지의 한계점이 존재했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남녀성비의 불균형이 연구결과의 정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표 3>에 따르면 설문대상자 총 571명 중 494명이 남성이었고 77명만이 여성이었다. 이러한 큰 성비의 차이는 부정확한 연구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질문을 통한 설문조사가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었다. 자기보고식 문항검사서 사이버범죄와 같은 부정적인 문항들은 청소년들이 내용을 의도적 왜곡할 수 있으므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셋째, 이 연구의 독립변수인 성별과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여부 외에, 학년과 지역 등 방해요소가 존재하여 연구결과의 부정확성을 나타낸다. 청

소년의 학년(연령) 차이에 따라 휴일 인터넷사용시간이 크게 다를 수 있으며, 지역간 사회적 환경 차이가 또한 청소년의 휴일 인터넷이용 시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한 독립변수의 주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학년과 지역 등 방해요소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한계점을 기반으로 제언을 하고자 한다. 현대 사회에 청소년들이 휴일 인터넷사용시간 증가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변인들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인터넷 이용 시간과 다양한 이용행태를 파악하는 데서 더 나아가 어떤 요인들이 이용 시간이나 이용 유형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오상화·나은영, 2009).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지현. (2021). “청소년 사이버폭력 가·피해의 성별 차: 사이버 비방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23(1): 165-19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김선숙·임세희. (2018). “지역사회 및 가구의 특성이 아동의 방과후 TV 및 인터넷 사용시간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한국아동복지학회」, 64: 205-230.
- 김우준. (2021). “폭력성의 중독 문제에 관한 고찰”, 「한국중독범죄학회보」, 2(2): 31-44.
- 김윤영·문진영·이창문. (2018). “청소년 인터넷 사용시간의 변화와 요인분석”, 「생명연구」, 49: 241-276.
- 김진영·이덕희. (2021). “중학생의 학교폭력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이 사이버 불링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 73-87.
- 김창균·이은주. (2010).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국제법무」, 2(2): 27-59.
- 박민희·전해욱. (2013). “성별에 따른 한국 청소년의 건강행태, 정신건강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련성”,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3): 1283-1293.
- 송승연·이창배. (2020).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의 영향요인”, 「한국범죄심리연구」, 16(4): 115-136.
- 이승대·김선미. (2008). “고등학생의 인터넷 이용 및 중독 실태에 따른 지도 방안 모색”, 「사회과교육」, 47(1): 77-101.
- 이승현·강지현·이원상. (2015).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481.
- 정규석·김영미·김지연. (2014). 「청소년복지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전신현. (2012). “고등학생들의 인터넷사용 및 그 유형과 우울의 관계: 성별 차이의 검증을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31: 153-173.
- 조운오. (2013). “성별에 따른 학교폭력 발생실태 및 유발요인 차이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1): 155-179.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한승주. (2020).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건강위험행위가 인터넷 사용시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홍성열. (2002). “범죄행동에서 돈과 폭력의 의미”, 「교정연구」, 15: 177-197.

〈국외문헌〉

Young, K. S. (1999). “Internet addiction: symptoms, evaluation and treatment”, *Innovations in Clinical Practice*, 17: 19-31.

【Abstract】

Effect of Adolescents' Gender and Cyber Violence Experience on Internet Use Time

Soyeong Kim^{*}

Jiho Kim^{**}

Hye-In Sim^{***}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modern society, the Internet has become an essential element in modern life. According to the "Internet Usage Survey"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in 2019, the average internet time per week of internet users 3 years and older is 17.4 hours. It is self-evident that the Internet, the self-interest of civilization, enriches our lives, but it is also clear that there are side effects from long-term use. The negative effects of Internet addiction are more serious in adolescents who are in the stages of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development. In addition, the average weekly internet use time of adolescents is 19.8 hours, which is higher than that of other age groups. Accordingly, studies on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long-term Internet use by adolescents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but studies on the causes of long-term Internet use are insignifica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whether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time spent on the Internet on holidays according to the gender of adolescents and their experiences of cyberbullying. For this purpose, data from the 「Adolescent Cyber Violence Facts Survey」 conducted in 2015 b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on about 5,700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excluding Jeju Island were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dependent main effects according to gender and experience of cyberbullying on holiday internet use time were not significant. Since then, the

* Master's Student, Dongguk University-Seoul Graduate School(first author), ksyksy1014@gmail.com

** Master's Student, Dongguk University-Seoul Graduate School(co-author)

***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Youngsan University(Corresponding Author), crimesim@ysu.ac.kr

interaction between gender and experience of cyberbullying on holiday internet usage time was also not found to be significant. As a result of post-hoc analysis, it was found that women spent more time on holiday internet than men at the level of no cyberbullying experience. In future research, it is hoped that the factors affecting the long-term Internet use time that cause negative results in various ways are explored by supplementing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referring to the results.

Key words: adolescent, internet, cyber violence, internet use time, violence, addictive

부 록

- 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 규정 · 93
- 형사사법연구 투고규정 · 97
- 형사사법연구 심사규정 · 105
- 형사사법연구 편집규정 · 108
- 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 연구윤리규정 · 110
- 형사사법연구 원고모집 안내 · 118

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 규정

2006. 10. 19. 제정

2008. 10. 13. 개정

2021. 6. 1.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및 소재) 이 연구소는 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하고, 동국대학교 일반연구기관으로 서울캠퍼스 사회과학대학에 둔다.

제2조 (목적) 이 연구소는 형사사법 관련 학문의 발전과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이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외부연구용역과제 수주사업
2. 연구논문집 발간
3. 학술행사개최
4. 학술서적 출간

제4조 (기구) ① 연구소의 운영과 중요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산하 연구부를 둔다.

1. 경찰학연구부
2. 범죄학연구부
3. 교정·보호연구부
4. 민간경비연구부
5. 법심리학연구부

제5조 (산하연구부기능) ① 경찰학연구부에서는 경찰의 인사, 조직, 치안정책 및 경찰작용, 인권문제 등 경찰학 연구를 통해 치안정책 개발에 기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범죄학연구부는 범죄의 현상, 원인 및 대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범죄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교정·보호연구부에서는 교정 분야와 보호관찰 분야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관학

협력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④ 민간경비연구부에서는 민간경비산업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여 산학협력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⑤ 법심리학연구부에서는 법심리학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산학협력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임직원) 이 연구소의 임직원은 다음과 같다.

1. 소장 1인
2. 연구위원 약간인
3. 연구부장 5인
4. 연구원 약간인
5. 조교 약간인

단, 필요에 따라 연구보조원 약간을 둘 수 있다.

제7조 (자격 및 임명) ① 소장의 자격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서 학장이 임명한다.

- ② 연구위원 및 연구부장은 본교 전임교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소장의 제청으로 학장이 위촉한다.
- ③ 연구원은 본 대학교 연구원 규정을 따른다.
- ④ 조교는 본 대학교 인사규정을 따른다.
- ⑤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제8조 (임 기) ① 이 연구소의 모든 임원(소장, 연구위원, 연구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연구원 및 조교는 본 대학교 연구원 및 조교 규정에 따른다.
- ③ 연구보조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직 무) ① 소장은 이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운영에 대한 일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연구위원, 연구부장은 연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및 연구를 수행한다.
- ③ 조교는 이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보조한다.
- ④ 연구보조원은 연구소장 및 연구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제10조 (정 원) 이 연구소에 소속되는 연구원 및 조교의 운영정원은 필요에 따라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연구위원회

제11조 (연구위원회) ① 이 연구소의 운영과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겸임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위원이 겸임한다.

제12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사업의 계획, 예산 및 결산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
4.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5. 기타 이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3장 제정 및 보고

제14조 (재원) 이 연구소의 재원은 학술용역사업의 수익금, 교육사업의 수익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운영한다.

제15조 (회계연도) 이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 (보고) ① 연구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기관 운영보고서(당해 연도 연구비 수혜현황 및 연구 활동 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 및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연구소장은 연구비 수혜현황 및 연구 활동 실적을 수시로 학장 및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해산) ① 학장은 본 연구소의 업적을 심사하여 그 업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단과대학 자체 심의를 거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② 본 연구소가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0월 19일부터 적용한다.(2006. 10. 19.)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3일부터 적용한다.(2008. 10. 13.)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2021. 6. 1.)

형사사법연구 투고규정

2010. 9. 1. 제정

2021. 6. 1. 개정

동국대학교 부설연구기관 경찰·범죄연구소 규정 제3조 제2항에 의거, 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연구논문집)의 명칭은 형사사법연구(Kore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라 한다. 학술지 형사사법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규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매년 2월 말일, 8월 말일 연 2회 발행되는 형사사법연구에 발표하는 논문은 경찰학, 범죄학, 범심리학, 교정학 및 인접학문 분야에 해당되는 학술논문으로서 독창성이 있고,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2. (원고제출 자격) 원고제출 자격은 해당 학문 분야의 석사과정 재학생 이상에게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논문의 내용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의 요건에 준하는 자의 논문도 게재할 수 있다.
3. (원고제출 방법) 원고는 당해 연도 권의 제1호를 위해서는 전년도 12월 말일, 제2호를 위해서는 6월 말일의 제출마감일까지 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 전자메일(e-mail)로 제출해야 한다. 마감일을 초과하여 제출한 논문은 다음 호 게재를 희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언어 및 원고작성) 제출 원고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것도 가능하다(단, 관련분야 연구자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여야 한다. 이 경우 초록은 한국어로 작성할 것을 권장한다). 제출원고는 형사사법연구의 원고작성지침을 따른 것이어야 한다. 원고작성지침은 동국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원 학술지-사회과학연구-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5. (학술지의 전자출판 및 저작권 활용 동의) 형사사법연구는 종이 문서 외에도 전자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재 등을 통해 발행할 수 있으며, 형사사법연구에 원고를 투고한 자는 논문기고 신청서의 “논문복사전송권 위임” 항목에 따라 해당 논문의 전자출판 및 저작권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6. 형사사법연구 편집위원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채택되지 않은 원고의 원본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원고작성지침

- 1.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로 130매(「한글」에서 본 학술지 편집규격 기준 25매 분량) 내외
- 2. 원고는 제목, 제출자, 목차, 본문의 순서로 나누어 작성하며, <표> 및 <그림> 등은 본문 내에 순서에 따라 기입한다.
- 3. 본문의 장, 절, 항, 목은 로마자 및 아라비아 숫자로 다음과 같이 구분 기재한다.
 - I. 1. 1) (1) ① 가)
 단, 더 세부적인 항목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자가 일정한 규칙을 갖고서 임의로 선택한다.
- 4. 본문 작성이 완료된 위치에 본문과 구분하여 <참고문헌>을 기재하되 참고문헌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5. 국문요약은 본문의 시작 전에 편성하되 용지 1매 이내로 하고, 영문요약(Abstract)은 논문 말미에 첨부하되 영문제목과 저자의 영문성명을 포함하여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되어야 한다.
- 6. 본문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만 漢字를 쓰도록 하며, 기타의 외국어 표기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원문 옆에 괄호로 표기한다.
- 7. 본문의 내용과 관계되는 저술을 소개하거나 추가적인 설명 또는 관련된 논의를 소개하고자 할 때는 본문주를 사용한다. 본문주의 인명, 서명, 논문명은 외국어의 경우 原語를 그대로 표기하며, 한글 또는 국한문 혼용의 경우에는 한글로 표기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의 원고작성범례를 참조한다.
- 8. <표> 및 <그림>의 경우 그 출처를 기재하며, 그 형식은 본문주와 같다. 출처와 본문주가 중복될 경우에는 재인용의 예를 따른다.
- 9. 감사의 말이나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논문제목의 우측 상단에 별표(*)를 하여 각주로 기재할 수 있다.

원고작성범례

I. 논문형식

- 1. 원고는 제목, 저자, 목차(장만 표기), 국문요약(주제어 포함), 본문, 참고문헌, 영문요약(키워드 포함)의 순으로 구성한다.

2. 논문요약(국문 및 영문)은 본 학술지의 편집규격 용지 1매 이내로 작성해야 하며, 최소 1/2 이상 작성해야 한다.
3. 원고의 표지에는 제목(국, 영문), 저자이름(국, 영문), 저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 e-mail 등을 명기하되 표지 이외에는 저자를 짐작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4.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경우 제일 앞에 기재된 저자를 제1저자로 본다.
5. 국·영문 주제어(Key Words)는 각각 5개 이상 작성한다.
6. 외래용어 및 외국어: 통일된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용어의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역어를 적고 괄호 안에 외래용어를 부기한다. 외국 인명과 지명은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하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명을 부기한다. 외국 혹은 국제적인 기관, 단체, 정당 등의 이름에 통용되는 역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사용한다(예: 국제연합). 그렇지 않은 경우 논문 중에 처음 등장했을 때 한글 번역 명과 괄호 속에 통용되는 원어 약어와 원어명을 병기한 다음 이후에 언급할 때는 원어 약어를 사용한다.
7. 원고의 본문주, 참고문헌 등은 아래의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II. 원고 작성시 집필요령

[본문주]

1. 인용,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참고주(reference notes)는 다음과 같이 본문 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그 자료의 내역을 정리하여 참고문헌(reference list)을 논문의 말미에 첨부한다.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출판년도 다음에 곧바로 콜론(:)을 하고 한 칸 띄우고 숫자를 표기한다. 한 번에 여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 괄호 안에서 세미콜론으로 나누어 언급한다.
 - 1) 저자가 본문의 일부로 언급되는 경우
 - 이황우(1999: 30)에 의하면...
 - 정진환(1992)과 김보환(1999)의 연구에서도...
 - Stevens(1998)의 주장을 수정하여...
 - 이상현(1991)과 Berg(1992)를 들 수 있다.
 - 2) 저자가 본문과 분리되어 언급되는 경우
 - ...입장을 취하고 있다(이종범 외, 1990; Berg, 1992; 김충남, 1999).

-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으며(Eisenberg et al., 1973; Green & Taylor, 1988)
- …라고 볼 수 있다(「경찰법」 § 11④; 경찰청, 1994; 김규식, 1999).
- 3) 법조문을 인용하는 경우
 - 「경찰법」 제11조 제4항에서는…
- 4) 특별한 저자가 없는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 「 ‘92 경찰사료연감」 (1993: 154)에 지시된…
- 5)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일 경우

한 저자의 이름만 표기하고 한 칸을 띄운 다음 “외(et al.)” 라는 말을 붙이거나, 모든 저자의 이름을 제시하여 저자가 두 사람 이상임을 나타낸다.

 - …이다(이황우 외, 2006).
 - …이다(이황우·조병인·최응렬, 2006).
- 6) 연도가 같은 동일 저자의 문헌이 2개 이상 인용될 경우

연도표기 뒤에 a, b, c… 를 부기하여 문헌을 구분한다.

 - …라고 볼 수 있다(김보환, 1998a).
 - …라고 볼 수 있다(김보환, 1998b).
- 7) 일간지, 주간지 등의 기명기사와 칼럼일 경우

저자명, 발행연도, 발행월, 발행일 순으로 작성한다.

 - …이다(최응렬, 2000. 10. 12)
- 8)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해야 하는 경우

지명, 발행연도, 발행월, 발행일, 페이지 순으로 작성한다.

 - …있기를 기대한다(「중앙일보」, 2005. 4. 26: 33).
- 9) 인터넷 자료를 인용할 경우

제작자명, 제작년도, 발행월, 발행일 순으로 작성한다.

 - …이다(최응렬, 2007. 10. 20).
- 2. 본문의 내용에 설명을 부연하기 위한 내용주(content notes)는 해당 부분의 오른쪽 위에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붙이고(예: …하였다.¹⁾), 그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참고문헌]

1. 참고문헌의 나열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만으로 제한한다.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참고문헌은 국내문헌과 국외문헌(동, 서양의 순)으로 구분하되, 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전자는 가나다의 순으로, 후자는 알파벳의 순으로 제시한다.
2. 동일 저자의 저술을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년도 순으로 나열

한다.

3. 동일 저자의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간된 것이 두 편 이상일 때는 저술제목의 가나다 또는 알파벳순으로 나열하되, 연도표기 뒤에 a, b, c…를 부기하여 구별하도록 한다.
4.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한다.
5.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발표장소와 날짜를 명기한다.
6. 참고문헌은 저자, 출판년도, 제목, 출판사항의 순으로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1) 단행본인 경우

[저자명. (출판년도). 「도서명」, 출판사항.]

 - 이윤호. (2005a). 「범죄학개론」, 서울: 박영사.
 - 이윤호. (2005b). 「교정학개론」, 서울: 박영사.
 - 이황우·조병인·최응렬. (2005a), 「경찰학개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 일반논문인 경우

[저자명. (출판년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 페이지.]

 - 주희중. (1999). “범죄에 대한 공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9: 87-121.
 - 이종범·김준한·정용덕. (1990). “행정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보」, 24(1): 367-426.
 - 3) 학위논문인 경우

[저자명. (출판년도). “논문제목”, 「학위유형」, 수여기관명.]

 - 정진환. (1979). “한국경찰교육제도의 발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4) 단행본의 저자와 기고논문의 저자가 다른 경우

[논문저자명. (출판년도). “논문제목”, 수록서의 저자명. 「수록서명」, 수록페이지, 출판사.]

 - 김창준·안영만. (1989).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료형태 비교”, 박동서·김광웅(공편). 「의회와 행정부」, 77-115, 법문사.
 - 5) 기타 저자가 없는 경우
 - 경찰청. (1993). 「1992 경찰사료연감」.
 - 경찰청. (2007). 「경찰백서」.
 - 6) 일간지, 주간지 등의 기명기사와 칼럼일 경우

[저자명. (발행연도. 발행월. 발행일). “기사명”. 「지명」, 페

이지.]

○ 최응렬. (2005. 4. 26).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논의 ‘수사의 질’ 향상에 초점 맞춰야”, 「중앙일보」, 33면.

7)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해야 하는 경우 [지명. (발행연도. 발행월. 발행일). “기사명”.]

○ 중앙일보. (2005. 4. 26).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논의 ‘수사의 질’ 향상에 초점 맞춰야”.

8) 외국문헌이 단행본인 경우(도서명은 이탤릭체로 변환) [저자명. (출판년도). *도서명*, 출판사소재지: 출판사.]

○ Weisburd, David & Braga, Anthony A. (eds.). (2006). *Police Innovation: Contrasting Perspective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9) 외국문헌이 논문인 경우(Journal명은 이탤릭체로 변환) [저자명. (출판년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 페이지.]

○ Powell, Dennis D. (1990). “A Study of Police Discretion in Six Southern Cities”,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17(1), 1-7.

10) 번역서의 경우

[저자. (원본 출판연도). 도서명, 번역자명(역). (번역본 출판연도). 「번역본 제목」, 출판사.]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김인필(역). (1995). 「범죄에 관한 일반이론」, 서울: 박영사.

11) 인터넷 자료를 인용할 경우

[제작자명. (제작년도). “주제명”, 웹주소, 최종검색일자.]

○ 홍길동. (200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http://ks.ac.kr>, 2007. 10. 20 최종검색.

[국문요약과 영문요약]

1. 논문 제출 시 원칙상 국문요약과 영문요약(Abstract)을 포함해야 하며, 작성 시 다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국문요약은 논문 제목과 저자명(소속) 밑에 작성하며, 분량은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국문요약 하단에는 5단어 이상의 주제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영문요약은 참고문헌 다음에 작성해야 하며, 영문제목, 저자의 영문성명과 영문소속, 연구 내용, Key Words를 포함해야 한다. 제목의 첫 단어와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하고, Key Words는 고유명사 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은 국문으로 된 국문요약과 ABSTRACT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편집위원회가 저자의 위임을 받아 ABSTRACT를 국문으로 번역할 수 있다.

[편집규격과 기타]

1. 투고논문의 규격과 양식
 - 1) 용지 종류 및 용지 여백:

용지 종류: 사용자정의(폭 171mm * 길이 251mm)
 용지 여백: 위쪽 26, 아래쪽 28, 오른쪽 28, 왼쪽 28, 머리말 15, 꼬리말 0
 줄간격: 160 (국문요약의 경우 150)
 자간: -10
 - 2) 논문제목: HY전명조 진하게 16p, 자간 -5
 - 3) 저자명: HY견고딕 12p
 - 4) 국문요약: 제목은 돋움체 진하게 12p, 가운데정렬, 본문은 돋움체 9p, 줄간격 150, 주제어는 돋움체 9p, 들어쓰기 10p
 - 5) 장절항목: 장제목은 한컴솔잎B 15p, 문단 위 간격 30, 문단 아래 간격 20, 절제목은 한컴소망B 12p, 항제목은 HY견고딕 11p, 들어쓰기 10p, 목제목은 휴먼명조 진하게 11p, 들어쓰기 20p
 - 6) 본문: 휴먼명조 10p, 들어쓰기 10p
 - 7) 각주: 돋움체 9p, 줄간격 130
 - 8) 참고문헌: 참고문헌 제목은 한컴소망B 13p, 가운데 정렬, 자간 10, 문단 위 간격 30, 문단 아래 간격 20, 국내문헌·국외문헌 제목은 HY견고딕 11p, 자간 -10, 참고문헌 본문은 휴먼명조 10p, 내어쓰기 40p, 자간 -10
 - 9) 영문요약: 제목은 휴먼고딕 진하게 16p, 가운데 정렬, 자간 -5, 영문성명은 휴먼명조 진하게 12p, 자간 0, 본문은 휴먼고딕 9p, 자간 -10, 영문주제어는 휴먼고딕 9p, 자간 -10, 들어쓰기 10p
2. 목차의 계층을 나타내는 기호체계는 I, 1, 1), (1), ①, 가)의 순서를 따른다.
 - I. 로마숫자(글자크기: 15p 진하게, 가운데정렬)
 1. 아라비아 숫자(글자크기: 12p, 2칸 들어쓰기)
 - 1) 한글(글자크기: 11p, 4칸 들어쓰기)
 - (1) 괄호숫자(글자크기: 10p, 6칸 들어쓰기)
 - ① 동그라미 숫자(글자크기: 10p, 8칸 들어쓰기)
 가) 반괄호한글(글자크기: 10p, 9칸 들어쓰기)
3. 표와 그림의 제목은 각각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표 1〉, 〈그림 1〉) 표와 그림의 윗부분에 쓰고, 설명주는 “주: 1), 2), 3)” 으로 시작하고(※주: ()은 점유율), 자료 출처는 아래 부분에 밝힌다(※자료: Duncan, 1981: 349의 재구성).

4. 표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는 * $p < .05$, ** $p < .01$, *** $p < .001$ 과 같이 표기한다.
5. 그림에서는 x축과 y축과 곡선·면적 등으로 표현된 각 부분의 명칭을 반드시 붙여 주어야 한다.
6. 원고 작성의 편의상 내용주, 표와 그림은 본문에 그 위치만 표시하고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7. 저자의 논문이나 저술을 가리킬 때에는 ‘졸고’ 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반드시 이름을 밝혀 적는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2010. 9. 1.)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2021. 6. 1.)

형사사법연구 심사규정

2010. 9. 1. 제정

2021. 6. 1. 개정

학술지 형사사법연구의 심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형사사법연구에 게재를 희망하는 논문의 원고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제출원고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모든 제출원고에 대하여 한 편당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이 때 원고제출자와 명백히 특별한 관계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3. 편집위원회가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 전공분야의 편집위원이 논문의 주제와 내용 등을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전문가를 우선적으로 추천하여 편집위원 전체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할 때 동일한 사람에게 동시에 3편 이상의 논문심사를 하지 않도록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5.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의 진행에 관한 기밀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학술지 형사사법연구의 심사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심사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은 주제의 적절성, 연구의 창의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구성·집필의 적절성, 논문 전개의 명료성, 활용자료의 충실도, 학술적 가치 등을 중심으로 논문을 심사하고 종합적인 심사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논문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논문심사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의견서의 모든 기재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야 하고, <최종판정> 의견을 기재할 때는 다음의 요령을 따른다.

- 1) 게재 가 : 별도의 보완 없이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2) 수정 후 게재 : 내용의 보완 혹은 수정을 거치면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수정 후 재심 : 내용의 전반적인 보완 및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보완 및 수정 후 별도의 심사를 진행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4) 게재 불가 : 게재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거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심사위원은 “심사평”을 첨부하여 심사소견 및 판정내용과 ‘수정사항’ 또는 ‘게재 불가 사유’를 명시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논문게재여부는 심사위원 2인의 심사결과를 검토하여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6. 편집위원회의 의결 후 게재 불가로 판정된 경우에는 제출논문은 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한편 재심사로 판정된 경우에는 초심에서 ‘게재 가’ 판정을 한 심사위원은 바꾸지 아니하고, ‘게재 불가’ 판정을 한 심사위원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재심사는 ‘게재 가’와 ‘게재 불가’의 두 종류로만 판정하며, 초심의 결과와 재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게재 가’가 둘 이상이면 ‘게재’로 최종 확정한다.
 8.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도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의 게재확정이 이루어져야 게재할 수 있다.

학술지 형사사법연구의 편집과 관련한 수정 지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논문의 원고작성 형식이 본 학술지에 맞지 않거나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편집위원장이 수정을 지시한다.
2. 수정 지시에 집필자가 불응하거나 2차에 걸친 통지에도 불구하고 수정논문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본 학술지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3. 기타 위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동국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원 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사회과학연구-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2010. 9. 1.)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2021. 6. 1.)

형사사법연구 편집규정

2010. 9. 1. 제정

2021. 6. 1. 개정

학술지 형사사법연구 발행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발행횟수) 형사사법연구의 발행은 연 2회를 원칙으로 한다.
2. (발행일시) 형사사법연구는 매년 당해 연도 권(卷) 제1호는 2월 말일, 제2호는 8월 말일에 각각 발행한다.
3. (원고마감) 각 년도의 제1호에 논문게재를 원할 경우 논문을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제2호에 게재를 원할 경우 논문을 당해 연도 6월 말일까지 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에 제출한다. 마감일을 초과하여 제출한 논문은 다음 호 게재를 희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원고분량) 형사사법연구에 게재할 원고는 200자 원고지로 130매(「한글」에서 본 학술지 편집규격 기준 25매 분량) 내외여야 한다. 제출원고가 현저하게 분량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필자에게 첨삭을 요청할 수 있다. 필자가 첨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논문을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5. (심사) 제출원고는 형사사법연구의 심사규정에 따라 엄정한 심사를 거친 후 게재 여부를 판정받는다(자세한 사항은 형사사법연구 심사규정 참조).
6. (편집) 게재가 결정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책임 하에 형사사법연구의 편집형태에 맞춰 일괄 편집한다.

학술지 형사사법연구의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구성) 편집위원회는 경찰·범죄연구소 소속의 연구부장 혹은 연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장이 위촉한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특히 경찰학, 범죄학, 법심리학, 교정학 및 인접학문 분야에서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는 교내외 교수 및 전문연구자들로 균형 있게 구성한다.
2. (목적) 편집위원회는 형사사법연구를 내실 있게 발간하는 데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임 무) 편집위원회는 형사사법연구 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고, 특집 및 기획의 계획과 심사,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선임, 그리고 형사사법연구와 관련된 여타의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4. (회의 개최 및 의사결정)
 - 1) 편집위원회 회의는 매년 원고제출마감 및 심사완료에 맞춰 각 2회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편집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 3) 편집위원회의 의사결정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히 결정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들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장)
 - 1)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기획과 편집 그리고 학술지 발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6. 기타 위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동국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사회과학연구-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2010. 9. 1.)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2021. 6. 1.)

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 연구윤리규정

2010. 9. 1. 제정

2021. 6. 1. 개정

제1장 총 칙

1. (목적) 동국대학교 부설 경찰·범죄연구소(이하 “본 연구소” 라 한다)는 본 연구소의 설립 취지 및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자 혹은 관계자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한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한다. 이 규정은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정의와 조치,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대상) 이 규정은 본 연구소의 관계자 및 본 연구소의 학술지 형사사법연구에 원고를 투고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연구윤리규정 서약)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규정 적용 대상자는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서약해야 한다.

제2장 연구관련 윤리규정

4. (표절)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 혹은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내용·연구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자신의 연구결과 혹은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표절)에 해당된다.
5. (부당한 저자표시)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업적을 인정받는다. 또한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된다.

6. (중복게재)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저작물을 새로운 연구인 것처럼 출판(투고)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중복게재)에 해당된다.
7. (위조, 날조, 변조) 저자는 자신의 연구에 대하여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위조), 사실이 아닌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거나(날조), 연구 과정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변조)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위는 연구부정행위(위조, 변조, 날조)에 해당된다.
8. (기타 연구부정행위) 상기 항목 외에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및 연구의 진실성과 윤리성을 저해하는 행위는 기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
9. (인용 및 참고표시)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 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하여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10. (결과 재검증을 위한 연구자료 공유) 연구 결과가 본 연구소의 학술지에 발표된 후 다른 연구자가 재분석을 통해 발표된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 자료를 요청하면, 연구 참여자에 대한 기밀이 보호될 수 있고, 소유한 자료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자료 공개를 금하지 않는 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료제공을 받은 자는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11. (편집위원 윤리)
 - 1) 편집위원이란 본 연구소의 학술지 형사사법연구의 편집위원을 말한다.
 -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12. (심사위원 윤리)

1) 심사위원이란 본 연구소의 학술지 형사사법연구 편집위원 중 투고된 원고의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을 말한다.

2)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합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3)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4)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5)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13. (연구소 관계자 윤리)

1) 연구소 관계자란 본 연구소의 소장, 연구부장, 연구위원, 편집위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조교 및 연구소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혹은 활동에 직접 참여한 자 등을 말한다.

2) 연구소 관계자는 연구소의 각종 사업과 기타 학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설립목적에 반하는 혹은 설립취지를 훼손하는 등의 제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연구소의 학술활동 등에 참여하는 자는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4) 연구소의 학술활동 등에 참여하는 자는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시행지침

14. (연구윤리규정과 현행법과의 갈등) 현행법이 연구윤리규정을 제한할 경우 현행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연구윤리규정이 현행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규정을 따라야 한다.
15. (연구윤리규정 위반 보고) 본 연구소에서 학술활동을 하는 자는 다른 이가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자로 하여금 연구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하며,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본 연구소의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16. (윤리위원회의 구성)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3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선임은 연구부장, 연구위원 혹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은 자 가운데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선임된 윤리위원들 가운데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17. (윤리위원회의 소집)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 또는 윤리위원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외부에서 연구윤리규정 위반 행위가 보고될 경우, 위원장은 14일 이내에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8. (윤리위원회의 권한)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연구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19. (윤리위원회의 조사)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20.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21.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본 연

구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22. (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윤리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 및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인사 혹은 위원이 아닌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회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은 심의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심의는 제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 심의가 종료되면 1주일 이내에 연구소장에게 보고하고, 피조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23. (재심의) 피조사자는 윤리위원회의 제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은 소집된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4.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연구윤리규정의 개정은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연구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자는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25. 기타 위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동국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사회과학연구-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2010. 9. 1.)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2021. 6. 1.)

<별표 1> 논문심사의견서

<형사사법연구> 논문심사의견서 ①

논문제목	
------	--

<심사위원 정보>

성명		연락처	
소속		직위	
주소			
이메일			
은행명		계좌번호	

<심사평가>

※해당란에 ○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 점수	10	9	8	7	6	5	4	3	2	1
주제의 적절성										
연구의 창의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구성·집필의 적절성										
논문 전개의 명료성										
활용자료의 충실도										
학술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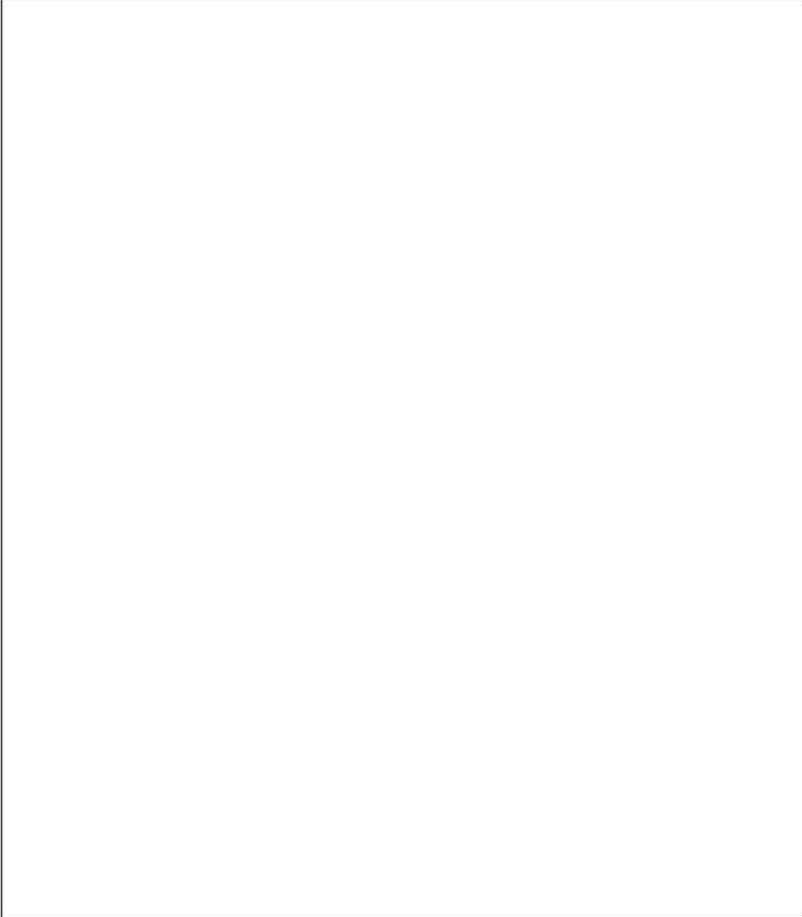
<최종판정>

※해당란에 ○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형사사법연구〉 논문심사의견서 ②

- 논문에 대한 심사평 또는 수정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재 불가 논문인 경우 계재 불가 사유 명시)
- 평가자의 인적사항은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논문투고자에게 통보됩니다.



<별표 2> 논문기고신청서

형사사법연구 제0권 제0호 논문기고신청서

성명			영문성명	
소속	국문			
	영문			
직위	국문		연락처	
	영문		e-mail	
주소				

논문분야				
논문제목	국문			
	영문			
주제어	국문			
	영문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	본인은 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의 연구윤리규정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함() ※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 연구윤리규정 참고.			
논문복사전송권 위임여부	동의함() 동의안함() ※복사전송권이란 학술지의 인터넷 전송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말함. 관련 내용은 형사사법연구 투고규정 참고.			
투고자 유의사항	<p>투고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게재가 거부될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연구 편집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논문이 창의적이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 ▪ 이 논문이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을 것. ▪ 이 논문이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을 것. <p style="text-align: center;">본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음()</p>			

* 보내실 곳: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사회과학관 M426 경찰·범죄연구소 편집위원회,
e-mail: ripcdgu@gmail.com

* 보내실 내용: ① 논문기고신청서, ② 기고논문 원본파일

* 형사사법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에 있음에 동의합니다.

형사사법연구 원고모집 안내

1. 발행예정 논문집

- (1) 형사사법연구 제5권 제1호
 - * 원고접수 마감일: 2021년 12월 31일
 - * 발행 예정일: 2022년 2월 28일
- (2) 형사사법연구 제5권 제2호
 - * 원고접수 마감일: 2022년 6월 30일
 - * 발행 예정일: 2022년 8월 31일

2. 투고 시 유의사항

- * 200자 원고지로 130매(「한글」에서 본 학술지 편집규격 기준 25매 분량) 내외
- * 논문기고 신청서를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십시오.
- * 국문/영문초록은 A4용지 1매 이내여야 하며, 영문초록 Key Word는 국문초록 주제어와 동일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 * 주제어는 국문·영문 모두 5개 이상 표기하여야 합니다.
- * 본문의 인용문헌과 참고문헌의 서지정보가 일치해야 하며, 참고문헌을 일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대상 논문은 심의를 통과한 후 심의결과서와 함께 논문을 투고할 수 있습니다.
- * 최종본 송부시 편집양식을 샘플양식 및 편집규정에 맞도록 편집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

투고와 관련된 문의는 다음의 연락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주 소: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사회과학관 M428 경찰·범죄연구소 편집위원회
- * 전화번호: 02-2260-3240
- * e-mail: ripcdgu@gmail.com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신소라(전주대학교)
편집위원 김다은(상지대학교)
김은주(세한대학교)
문인수(영산대학교)
박보라(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찬혁(영산대학교)
박희균(세명대학교)
심민규(나사렛대학교)
심혜인(영산대학교)
조제성(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홍승표(전주대학교)
편집간사 이해진(동국대학교)

형사사법연구

제4권 제2호, 2021년

발행일 2021년 8월 31일
발행인 조운오
발행처 동국대학교 부설 경찰·범죄연구소
주소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
TEL: 02-2260-3247
e-mail: ripcdgu@gmail.com
인쇄처 동국카피센터 (TEL: 02-2271-0776)